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9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6년 11월 07일
4. 회부일자 : 2015년 11월 08일

II .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예산안 개요

1.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본예산(A)	2016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규모		8,147,725	8,001,287	146,438	1.8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484,598	4,646,652	△162,054	△3.5
	자치단체이전수입	2,914,634	2,589,628	325,006	12.6
	기타이전수입	4,006	5,274	△1,268	△24.0
	자체수입	162,107	149,128	12,979	8.7
	지방교육채	270,516	423,177	△152,661	△36.1
	순세계잉여금	311,864	187,428	124,436	66.4
세 출	인건비	5,374,434	5,304,665	69,769	1.3
	기관운영비	40,881	38,373	2,508	6.5
	학교운영비	750,488	706,141	44,347	6.3
	교육사업비	1,386,295	1,014,154	372,141	36.7
	시설사업비	401,777	495,781	△94,004	△19.0
	지방교육채 및 BTL	186,120	182,306	3,814	2.1
	예비비	7,730	259,867	△252,137	△97.0

2.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7년		2016년		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이 전 수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484,598	55.1%	4,646,652	58.1%	△162,054	△3.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914,634	35.8%	2,589,628	32.4%	325,006	12.6%
	기타이전수입	4,006	0.0%	5,274	0.1%	△1,268	△24.0%
	소 계	7,403,238	90.9%	7,241,554	90.5%	161,684	2.2%
자 체 수 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22,642	1.5%	130,403	1.6%	△7,761	△6.0%
	행정활동수입	5,176	0.1%	5,300	0.1%	△124	△2.3%
	자산수입	13,718	0.2%	753	0.0%	12,965	1721.8%
	이자수입	4,066	0.0%	3,075	0.1%	991	32.2%
	금융자산회수	0	0.0%	5	0.0%	△5	△100.0%
	기타수입	16,505	0.2%	9,592	0.1%	6,913	72.1%
	소 계	162,107	2.0%	149,128	1.9%	12,979	8.7%
차입	지방교육채	270,516	3.3%	423,177	5.3%	△152,661	△36.1%
기타	전년도이월금	311,864	3.8%	187,428	2.3%	124,436	66.4%
합 계		8,147,725	100%	8,001,287	100%	146,438	1.8%

3.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6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인건비	5,374,434	66.0%	5,304,665	66.3%	69,769	1.3%
기관운영비	40,881	0.5%	38,373	0.5%	2,508	6.5%
학교운영비	750,488	9.2%	706,141	8.8%	44,347	6.3%
교육사업비	1,386,295	17.0%	1,014,154	12.7%	372,141	36.7%
시설사업비	401,777	4.9%	495,781	6.2%	△94,004	△19.0%
지방채상환	186,120	2.3%	182,306	2.3%	3,814	2.1%
예비비및기타	7,730	0.1%	259,867	3.2%	△252,137	△97.0%
합계	8,147,725	100%	8,001,287	100%	146,438	1.8%

4. 주요사업 편성 내역

가. 교육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인 적 자 원 운 용	21,212	1.5%	19,451	1,761	9.1%	21,212	0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342,380	24.6%	282,117	60,263	21.4%	311,028	31,352
교 육 복 지 지 원	903,705	65.2%	638,347	265,358	41.6%	857,103	46,602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5,066	0.4%	5,009	57	1.1%	5,066	0
평 생 교 육	23,383	1.7%	18,192	5,191	28.5%	21,866	1,517
직 업 교 육	913	0.1%	1,945	△1,032	△53.1%	913	0
교 육 행 정 일 반	89,636	6.5%	49,093	40,543	82.6%	89,636	0
합 계	1,386,295	100.0%	1,014,154	372,141	36.7%	1,306,824	79,471

나. 시설사업비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	증감률	비 고	
학교 신증설	학 교 신 설	85,738	181,822	△96,084	△52.8%	○ 학교신설 : 37교 - 유19, 초8, 중2, 고4, 기타4	
	교 실 증 축	10,700	11,928	△1,228	△10.3%	○ 교실증축 : 31교 - 유15, 초15, 중1	
	소 계	96,438	193,750	△97,312	△50.2%		
시설 개선	일 반 시 설	학교시설증개축	37,783	29,506	8,277	28.1%	○ 강당검체육관 : 42교 ○ 기타증축 : 20교
		교육환경개선	224,578	233,466	△8,888	△3.8%	○ 노후시설개선(13개사업)
		본청시설관리	239	353	△114	△32.3%	○ 청사이전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등 4건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794	2,591	203	7.8%	○ 11개교육지원청시설유지보수 ○ 성동광진 개별난방개선 등 14건
		직속기관시설관리	6,341	3,784	2,557	67.6%	○ 교육연수원 흡수식냉온수기 교체 등 34건
		소 계	271,735	269,700	2,035	0.8%	
	급 식 시 설	조리기구교체	15,155	12,668	2,487	19.6%	○ 신규학교 조리기구구입 등 277건
		급식시설보수	2,520	639	1,881	294.4%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12건
		급식시설신증축	15,929	19,024	△3,095	△16.3%	○ 20교
		소 계	33,604	32,331	1,273	3.9%	
	계	305,339	302,031	3,308	1.1%		
합 계	401,777	495,781	△94,004	△19.0%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예산안 총괄

-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하 ‘예산안’이라 함)의 총규모는 8조 1,477억 2천 5백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8조 12억 8천 7백만원보다 1,464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지난 4년간 연평균 증가율 3.0%에 못 미치는 1.8% 수준에 해당함.

[표1] 2013~2017년도 본예산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본예산액	73,689	74,391	76,901	80,013	81,477
전년대비	2,526	702	2,510	3,112	1,464
증 감	3.5%	1.0%	3.4%	4.0%	1.8%

2.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이하 ‘재정계획’이라 함)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다년도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¹⁾

1)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표2] 중기 지방교육재정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계	43,335,825	8,660,139	8,515,326	8,499,913	8,708,870	8,951,577	0.8
교특회계	43,191,871	8,638,079	8,466,671	8,455,808	8,679,736	8,951,577	0.9
추가소요액	1,736,419	355,485	353,766	346,678	343,250	337,240	△1.3
기 금	143,954	22,060	48,655	44,105	29,134		△100.0

- 계획기간 중 중기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43조 3,358억원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 학교운영비(사립학교 포함) 증가, 청사 이전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 등의 지출증가로 인해 연평균 0.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재정계획 28p).

가. 중기 재정수입 전망(재정계획 29~32pp)

-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개선,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2017년 이후 경제성장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법에 따라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내국세 수입 증가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⑩ (생략)

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2016.9, 14p.

-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은 이를 기초로 중기 이전수입 전망을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이전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³⁾

[표3] 중기 이전수입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계	7,693,180	7,811,388	8,179,283	8,406,736	8,693,733	3.1
중앙정부이전수입	4,727,610	4,823,884	5,038,873	5,269,659	5,464,594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00,439	4,793,866	5,014,184	5,245,491	5,440,930	3.7
보통교부금	4,518,483	4,608,829	4,820,655	5,043,040	5,231,146	3.7
특별교부금	181,956	185,037	193,529	202,451	209,784	3.6
국고보조금	27,171	30,018	24,689	24,168	23,664	△3.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961,564	2,983,498	3,136,404	3,133,071	3,225,133	2.2
법정이전수입	2,896,984	2,917,849	3,068,549	3,063,866	3,153,859	2.1
지방교육세전입금	1,361,334	1,384,114	1,418,717	1,457,509	1,495,355	2.4
담배소비세전입금	285,415	295,119	305,153	315,528	326,256	3.4
시·도세전입금	1,110,455	1,118,329	1,172,331	1,194,434	1,234,144	2.7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8,181	27,144	77,606	-	-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78,516	80,400	82,330	84,306	86,329	2.4
교육급여보조금	13,083	12,743	12,412	12,089	11,775	△2.6
비법정전입금	64,580	65,649	67,855	69,205	71,274	2.5
기타(민간)이전수입	4,006	4,006	4,006	4,006	4,006	0.0

- 그러나 지난 10월 기준 기획재정부와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3.0%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국세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됨.⁴⁾

3) 이는 정부가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 3.5%보다 0.2% 높게 전망한 것임(「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2016.9. 30p). 다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분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전제로 지방이전재원을 구분하여 각각 재원별로 전망치를 산출한 것이므로 동 법률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따라 전망치는 수정될 수 있음.

(단위: 조, %)

	'16	'17	'18	'19	'20	연평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	40.7	43.0	45.2	47.4	3.5
지방교육정책 지원 교부금	-	3.8	3.8	3.6	3.5	△3.3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표4] 2017년도 국내 경제성장률⁵⁾ 기관별 전망(2016.10 기준)

(단위: %)

기 관	경제성장률 전망	2015년도 동일시기 전망치
정부	3.0	3.3
한국은행	2.8	3.2
한국개발연구원(KDI)	2.7	3.1
한국금융연구원	2.5	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	3.1
현대경제연구원	2.6	2.8
LG경제연구원	2.2	2.7
한국경제연구원	2.2	2.6
평균	2.63	2.99

- 특히 중국 경제 둔화, 유로존 불안 가중, 가계부채 부담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조선·해운 사태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과 대규모 실업 사태 발생 등이 국내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소비 위축 등 내국세 감소의 부담요인이 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실질증가율이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정수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나. 중기 재정지출 전망(재정계획 32~37pp)

- 중기 재정지출 중 경상지출은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의 증가로 인해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비 지출의 경우 학령인구수의 감소 등에 따라 연평균 4.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별 총 재정지출은 연평균 0.8%의 수준의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

[표5] 중기 성질별 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계	8,660,139	8,515,326	8,499,913	8,708,870	8,951,577	0.8
교육비특별회계	8,638,079	8,466,671	8,455,808	8,679,736	8,951,577	0.9
경상지출	6,380,441	6,472,506	6,619,436	6,792,223	7,052,201	2.5
사업비	2,249,908	1,986,435	1,828,642	1,879,783	1,891,646	△4.2
추가소요액	355,485	353,766	346,678	343,250	337,240	△1.3
예비비	7,730	7,730	7,730	7,730	7,730	0.0
기금	22,060	48,655	44,105	29,134		△100.0
기금경상지출						
기금사업비	22,060	48,655	44,105	29,134		△100.0

※ 추가소요액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임.

- 다만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 규모는 공무원 등 인건비와 같은 경상지출 증가분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⁶⁾ 의무지출 범위의 확대에 말미암아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총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0.8%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총 재정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율의 증가로 인해 예산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됨.

[표6] 중기 재정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계	43,191,871	8,638,079	8,466,671	8,455,808	8,679,736	8,951,577	0.9
의무지출	38,668,590	7,542,040	7,484,170	7,600,431	7,872,978	8,168,971	2.0
추가소요액	1,736,419	355,485	353,766	346,678	343,250	337,240	△1.3
비율	89.5	87.3	88.4	89.9	90.7	91.3	
재량지출	4,523,281	1,096,039	982,501	855,377	806,758	782,606	△8.1
비율	10.5	12.7	11.6	10.1	9.3	8.7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의무지출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제4호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이하 ‘누리과정 지원비’라 함)를 의무지출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도⁷⁾ 누리과정 지원비를 정상적 경비로 예산에 편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누리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의무지출의 확대에 인하여 재량지출사업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더욱이 금번 재정계획에는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국가와 시·도 교육청 간 사무귀속 문제와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재원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누리과정 지원비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분을 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는바, 이를 반영할 경우 의무지출 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되어 예산의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교육청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요불급의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지출 증가분만큼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성과계획안에 대한 검토

- 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안」(이하 ‘2017 성과계획안’이라 함)을 제출하였음.⁸⁾

7)「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정상적 경비)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경비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29p)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게 지급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는 반드시 누리과정지원 세부사업에 편성하고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금지’함을 명시하고 있음.

- 금번 2017 성과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5개 전략목표와 22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94개 단위 과제(예산안 기준 109개 세부사업)로 계획되었고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예산 총액 대비 21.7%인 1조 7,674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음.⁹⁾

그 중 전략목표 ‘Ⅱ-2,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 ‘Ⅱ-3.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 ‘Ⅳ-4.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시설 확충 사업’이 전체 성과계획 예산의 66.6%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누리과정 지원, 학기중 급식비 지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특정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병행하는 등 보다 세분화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8)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p)은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을 성과관리 대상 사업으로 하면서도 ①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②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③ 재무활동(지방교육채, 민간투자사업상환, 일시차입금관리, 기금적립), ④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제지출금, 내부유보금), ⑤ 세부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사업경비가 아닌 세출예산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다음으로 2017 성과계획안은 모든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성과지표를 정량(계량)지표로 설정하여 1개의 과정지표, 20개 결과지표, 73개의 산출(배분)지표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각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파악하는데 객관적이고 적절한 측정산식을 도입하였는지 의문임.

예컨대 2017 성과계획안은 전략목표Ⅱ-3③ ‘학기중 급식비 지원비율’을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하여 ‘급식비 지원 신청 학생 수 대비 급식비 지원 학생 수’를 측정산식으로 목표 달성도를 설정하고 있음(2017 성과계획안 204p).

그러나 동 성과지표는 참여협력담당관과 체육건강과의 학기중급식비지원이 합쳐진 사업으로 참여협력담당관의 학기중급식비지원의 경우에는¹⁰⁾ 신청 학생 수 대비 지원 학생 수라는 측정산식이 적합할 수 있겠으나, 체육건강과의 학기중급식비지원은 공립초 전체와 국·공·사립 중학교 전체 그리고 초등인가 대안학교(지구촌학교)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 신청 학생 수를 기준으로 급식비 지원 학생 수의 정도를 산출하는 산식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세부사업은 동일하나 사업대상 자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을 하나의 측정산식으로 설정한 이유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이 단위과제를 예산체계상의 세부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세부사업과 1:1 매칭이 되도록 설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다만 교육청은 동 지침에 따라 두 가지 별개의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합쳐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경우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할 수 있

10) 학교급식에서 제외되는 국제중, 각종중 및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45,460명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임(예산서 797p, 사업별 설명자료 451p).

는 기준을 측정산식으로 설정하였어야 하는바, 급식비 지원 ‘신청’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실질 수혜 여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해서도¹¹⁾ 전략목표 I-1③ ‘창의교육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제고’ 등의 10개의 만족도 성과지표의 경우 모두 ‘결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전략목표 III-2① ‘노사관계 외부 위탁 교육만족도’는 ‘산출(배분)’지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표 설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2017 성과계획안 205p).

이러한 문제점은 각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스스로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바,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성과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성과지표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세입예산 검토

가. 세입예산 총괄

-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1,464억 3천 8백만원이 증

1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5p) 성과지표를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하면서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였음.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

구분	개 념	특 성
투입 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가한 8조 1,477억 2천 5백만원으로, 이전수입 7조 4,032억 3천 8백만원, 자체수입 1,621억 7백만원, 지방교육채 2,705억 1천 6백만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 3,118억 6천 4백만원이 편성됨.

[표7] 2015~2017년도 자원별 세입 총괄(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의존재원	6,891,264	89.6	7,241,554	90.5	7,403,238	90.9
자체재원	161,296	2.1	336,556	4.2	473,971	5.8
지방교육채	637,531	8.3	423,177	5.3	270,516	3.3
주민(기관)부담		0.0		0.0		0.0
계	7,690,091	100.0	8,001,287	100.0	8,147,725	100.0

- 2017년도 총 세입예산 대비 의존재원 비율은 90.9%로 전년도 보다 0.4% 증가하였음.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의존재원 연평균비중인 90.3%와 비슷한 수준이라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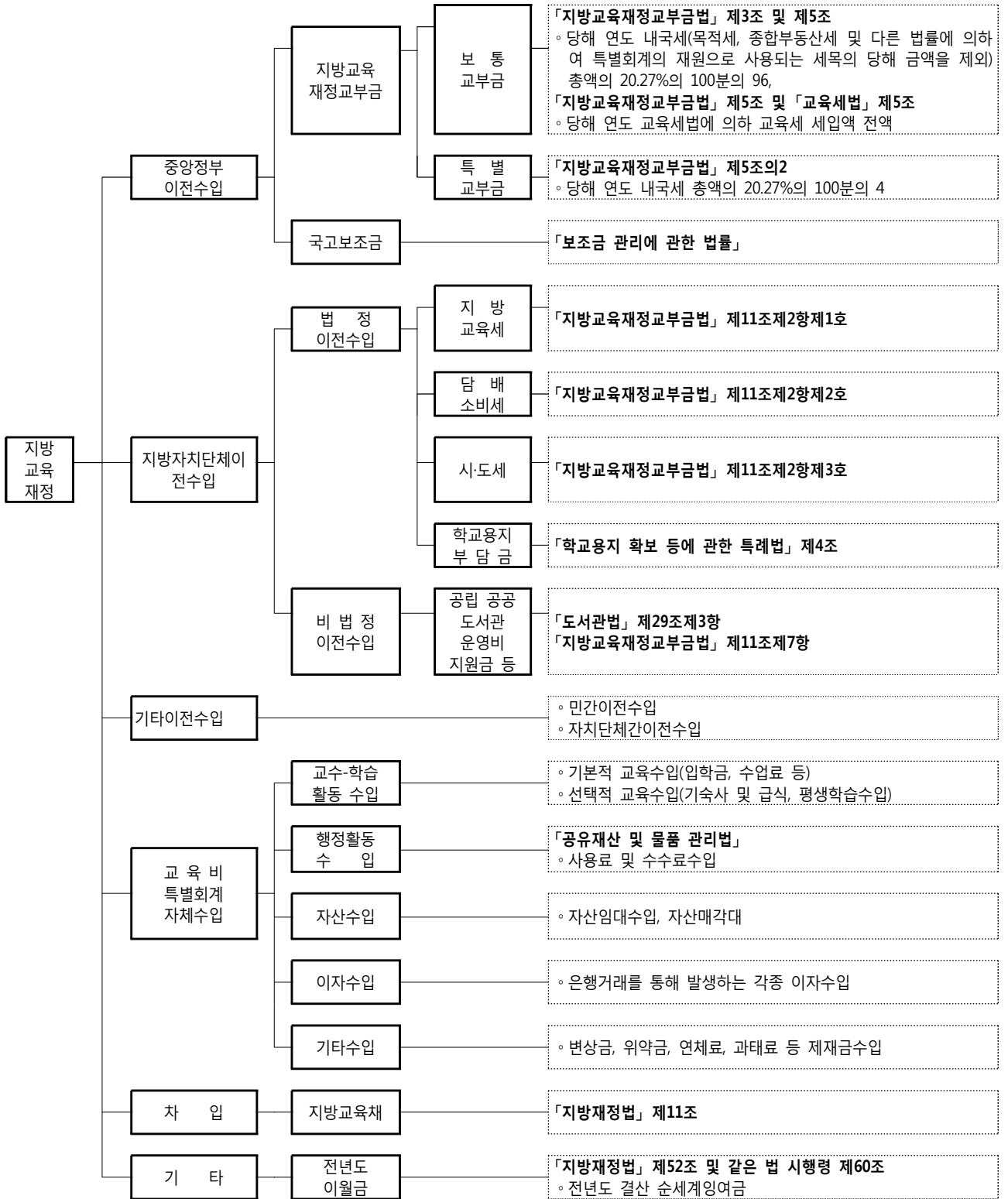
다음으로 총 세입예산 대비 자체재원 비율은 5.8%로 전년도 보다 1.6% 증가하였음. 본예산 기준 자체재원 비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는 재산매각 등으로 인하여 자산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교육청의 세입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며 재원의존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음.

[표8] 2015~2017년도 자체재원 총괄(추가경정예산 포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2016.9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업료 및 입학금	131,251	38.78	93,769	13.89	120,275	25.39
사용료 및 수수료	4,998	1.48	3,770	0.56	5,176	1.09
자산수입	2,658	0.79	8,704	1.29	13,719	2.90
이자수입	3,948	1.17	5,662	0.84	4,066	0.86
순세계잉여금	125,696	37.14	319,104	47.26	311,864	65.82
전년도이월금	56,028	16.56	221,817	32.85	-	0.00
기타사업비	13,839	4.09	22,327	3.31	18,691	3.94
계	338,418	100.00	675,153	100.00	473,791	100.00

[표9] 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



나. 이전수입(예산서 pp29~65, 사업별 설명자료 pp5~15)

[표9] 2015~2017년도 의존재원(이전수입) 세입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부금(중앙정부)	4,340,558	63.0	4,629,663	63.9	4,464,378	60.3
국고보조금(중앙정부)		0.0	16,989	0.2	20,220	0.3
지방교육세(지자체)	1,224,090	17.8	1,191,569	16.5	1,361,334	18.4
담배소비세(지자체)	217,996	3.2	223,045	3.1	285,415	3.9
시도세(지자체)	985,710	14.3	1,046,722	14.5	1,110,455	15.0
학교용지매입비	24,549	0.4	22,606	0.3	48,181	0.7
비법정이전수입(지자체)	4,177	0.1	4,177	0.1	17,650	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88,818	1.3	90,183	1.2	78,516	1.1
교육급여보조금		0.0	11,326	0.2	13,083	0.2
기타이전수입	5,366	0.1	5,274	0.1	4,006	0.1
계	6,891,264	100.0	7,241,554	100.0	7,403,238	100.0

- 이전수입 총규모는 7조 4,032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616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보다 2,014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전년도 보다 3,250억 6백만원 증가하여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증가하였음. 다만, 세입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사업을 포함한 의무지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가용재원의 실질적 경직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내국세 비율을 현행(20.27%)와 같이 유지한 상황에서 의무지출 사업 등을 확대할 경우 재정운용의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바, 교육청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임.¹²⁾

12)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안 국회 계류 현황은 [붙임] 참고

1) 중앙정부이전수입

[표10] 2015~2017년 중앙정부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보통교부금	4,340,558	4,629,663	4,464,378
특별교부금	-	-	36,195
국고보조금	-	16,989	20,220
합계	4,340,558	4,646,652	4,484,598

- 금번 예산안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1,620억 5천 4백만 원이 감소한 4조 4,845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통지된¹³⁾ 보통교부금 4조 4,281억 8천 3백만원과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361억 9천 5백만원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¹⁴⁾에 따른 교육급여지원 등 국고보조금 202억 2천만원이 주요 재원임.

가) 보통교부금

-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2,014억 8천만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는바, 이는 인건비 상승 등 기준재정수요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부동산 경기회복세 진전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인 지방세가(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전입금) 증가하였기 때문임.

13)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알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674(2016.10.21.)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 지방세 전입금 자원 구성

- 지방교육세 전입금 : 6개 세목
 - ※ 취득세액의 10%,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구 50만이상시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전입금 : 특별 및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 시도세 전입금 : 시도세 총액의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시도 3.6%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산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세입 재원으로, 교육청 전체 세입의 54.3%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임.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등으로 구분되고,¹⁵⁾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100%, 수업료 및 입학금은 수입액의 85%,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100%,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으로 산정하고 있음.¹⁶⁾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참고.

16)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times B) \times 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자세한 산정내역은 [붙임2]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산정내역 참고.

- 다만, 교육부는 금번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과 관련하여 교육환경개선비 일부와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및 방과후학교사업비를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동 특별회계는 예산안 부수법률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의 국회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동 법률안들도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은 동 특별회계 교부예정액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에 포함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

[표11] 특별회계 설치 및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 시 예산 형태 비교¹⁷⁾

(단위: 백만원)

구분	특별회계 설치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		
회계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내국세×20.27%	일반회계	내국세×20.27% + 「교육세법」상의 교육세	
	특별회계	「교육세법」상의 교육세			
세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내국세×20.27%×4%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내국세 20.27%×96% + 「교육세법」상의 교육세 (법안 통과 시의 보통교부금과 특별회계 합산값)
	특별회계	내국세 ×20.27%×4% (특별회계사업 제외) 내국세 ×20.27%×96% (특별회계사업 제외) 국세 교육세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등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 사업)			
계	4,428,183		4,428,183		

※ 총액 변동 없음

- 결과적으로 현행과 같은 보통교부금 체계를 유지하든, 교육세를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부하든 그 세입 규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

17) 세목별 조세체계는 [붙임3] 참고.

다만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동 특별회계의 설치가 확정되는 경우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및 방과후학교사업비 등의 의무지출 사업에 대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은 있음.

그러나 전체 사업비 1조 7,880억 7천 2백만원의 43.1%에 해당하는 7,712억 9천 6백만원의 사업이 의무지출 사업으로 편성되면 결국 지방교육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현재 교육청의 전체 예산 중 의무지출 비중이 88.7%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자율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표12] 의무지출, 재량지출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6년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율
세출총액	8,147,725		8,001,287		146,438	1.8
의무지출	7,226,460	88.7	6,637,432	83	589,028	8.9
재량지출	921,265	11.3	1,363,855	17	△442,590	△32.5

나) 특별교부금

- 다음으로 금번 예산안에는 1학생1예술체험지원 사업 등 29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361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교육청이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을 학교에 사전 안내 함으로써 학교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예측을 용이하게 하여 사업의 중복추진을 방지하는 등 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 조치로 이해됨.¹⁸⁾

18)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27%의 금액 중 4%를 해당재원으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 성립전 사용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집행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왔음(예산안 총칙 제9조).

이와 같은 특별교부금은 그동안 일방적 국가시책사업의 예산편성 추진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운용에 부담을 가중시켜왔으며, 학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현장의 업무 피로감 누적과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왔음.

특히 특별교부금은 회계연도 중 수시로 교부되어 사업예측이 어렵고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중복되는 등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19) 교육감이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어 교육청은 불요불급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13] 2013~2015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결산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입결산액	8,171,203		7,925,316		8,468,772	
교부합계	189,881	2.3	171,418	2.2	154,974	1.8
국가시책사업	133,813	1.6	113,817	1.4	102,511	1.2
지역교육현안수요	48,897	0.6	53,667	0.7	45,997	0.5
재해대책수요	7,172	0.1	3,934	0.1	6,465	0.1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 따라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적재적소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이나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현장에 적합하도록 교육부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 특별교부금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령 신규사업, 대규모 재원(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교육청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응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 교육공무직의 추가 인건비 편성 등 경직성 경비를 증가시키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청의 재정운용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신청하거나 사업 중단 및 예산 반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국고보조금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계	20,220	16,989	73,864	3,231
교육급여지원	19,625	16,989	0	2,636
SW교육선도학교운영	555	0	502	555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40	0	40	40

- 금번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2억 3천 1백만이 증가한 202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교육급여지원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인바, 금번 예산안에는 전년도 보다 26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196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이 지정된 재원이라 하겠음.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는 교육급여 재원분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교육급여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0대 40의 비율로 분담하여 편성되었음.²⁰⁾

[표14] 교육급여지원 재원분담 내역

(단위: 백만원, %)

부담 주체	재원분담		비중
	금액	분담율	
중앙정부(교육급여 국고보조금)	19,625	60.0	34.2
지방자치단체(교육급여보조금)	13,083	40.0	22.7
소 계	32,708	100.0	56.9
교육청		24,749	43.1
총 계		57,457	100.0

다만, 교육청은 2016년도 교육급여지원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증가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대상자 중 수업료를 지원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 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 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받는 학생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나,

오히려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급여가 아닌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을 신청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 126억 8천 4백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비로 편성한바 있음.

- 교육급여는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가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부분이 기존의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교육급여가 아닌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수급 대상자 산출 기초자료의 경우 학교 재학여부 등과 관계없이 연령별 학령인구를 일괄적으로 추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수급 대상자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청은 금번 교육급여지원과 관련하여 학교 설명회 개최 및 학부모 안내 등을 통해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15] 교육급여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비교

구분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주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교육부, 시·도교육청('15.7~)	교육부, 시·도교육청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예산 ('16년)	총 2,669억원 (국고 1,450억원 지방비 330억원, 시도교육청889억원)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8,435억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 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연 133.5만원) - 고교 교과서대(연 13.13만원) - 중·고 학용품비 (연 5.33만원) - 초·중 부교재비 (연 3.92만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연 17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초·중고 급식비 - 초·중고 방과후수강권 (연 60만원) - 초·중고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연 21만원 등)
지원방식	-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학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 납부금을 3월에 선 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 교육급여 수급자는 납부유예 처리 -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표16] 2013~2017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광역	2,327,172	2,334,708	2,545,341	2,589,628	2,914,634
기초	-	-	-	-	-
합계	2,327,172	2,334,708	2,545,341	2,589,628	2,914,634

- 금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3,250억 6백만원 증가한 2조 9,146억 3천 4백만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3,115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2조 8,969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134억 7천 3백만 증가한 17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²¹⁾

[표1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항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합계	2,914,634	2,589,628	325,006	12.6
	법정이전수입	2,896,984	2,585,451	311,533	12.1
	지방교육세전입금	1,361,334	1,191,569	169,765	14.3
	담배소비세전입금	285,415	223,045	62,370	28.0
	시도세전입금	1,110,455	1,046,722	63,733	6.1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8,181	22,606	25,575	11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78,516	90,183	△11,667	△12.9
	교육급여보조금	13,083	11,326	1,757	15.5
	비법정이전수입	17,650	4,177	13,473	322.6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7,650	4,177	13,473	322.6

가)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에 따라²²⁾ 「지방세법」 제151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

21)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 통보[교육정책담당관-14934(2016.10.25.)]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

여 교부되는 세입재원으로 전년도 보다 1,697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한 1조 3,613억 3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623억 7천만원이 증가한 2,854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세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637억 3천 3백만원 증가한 1조 1,104억 5천 5백만원 편성하였음.

그 밖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481억 8천 1백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785억 1천 6백만원, 교육급여보조금 130억 8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7항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²³⁾ 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41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²⁴⁾ 134억 7천 3백만원을

여야 한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⑦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4)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순증 편성하였음.

-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서울시의 비법정전출금 예산안과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 예산안상의 세입·세출 규모가 서로 상이하게 계상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왔음.

특히 서울시로부터 전입되는 비법정전입금은 본예산 확정 후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시기별로 교부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조속한 개선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음.²⁵⁾

이러한 지적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교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학교를 확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음.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지원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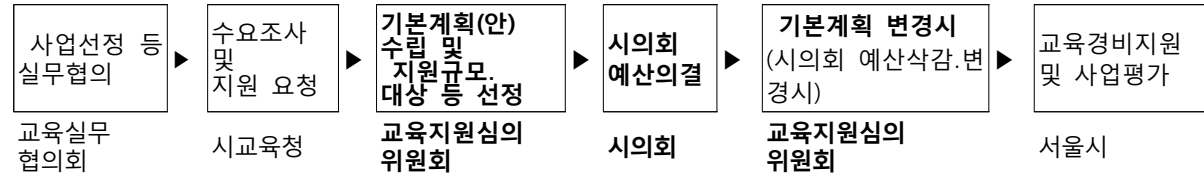
25)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2014. 12. 1)에서도 “비법정전입금이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회의록 참고).

< 기존 비법정전입금 사업선정 절차 >

-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교육지원 예산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학교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교육청으로 제출함으로 인하여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할 수 없었음.

< 개선안 >

- 예산편성안을 제출하기 전에 교육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대상학교를 확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함.



-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 대상학교, 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이에 따라 금번 세입예산안에는 교육지원심의회가 지난 10월 26일
확정한 「2017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 상의 29개 사업 중 냉난방
개선 등 7개 사업 134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²⁶⁾

- 교육청이 금번 세입예산안에 비법정이전수입 중 교육경비 지원 사업
에 대한 일부 재원을 계상한 것은 기존의 잘못된 예산편성 관행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조치라 하겠으나, [표18]과 같이
화장실리모델링 등 다수의 사업이 여전히 예산안에 계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²⁷⁾

따라서 교육청은 시의회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전에 미
리 대상사업과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조정노력을 기울여야 함.

26)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의 「2017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는 학습준비물지원 등 29개 사업의 576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7)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
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표18] 2017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예산(A)	2017년			비 고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29)	41,716	57,677	15,961	38.3	
일반교육지원사업(28)	37,544	51,909	14,365	38.3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5)	8,405	10,135	1,730	0.4	
1.학습준비물비 지원	5,538	5,356	△182	△3.3	412천명(학생수△14천명)
2.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779	1,779	-	-	14,800명
3.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1,088	1,100	12	1.1	79개교
4.자전거안전교육 지원	-	200	200	100	67개교
5.혁신교육지구 지원	-	1,700	1,700	100	22개 자치구
대상학교선정지원사업(23)	29,139	41,774	12,635	49.2	
8.화장실 리모델링	10,000	10,000	-	-	235개교
7.노후 냉난방기 개선	3,500	3,500	-	-	35개교
8.노후급식시설 개보수	6,009	6,000	△9	△0.1	134개교
9.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400	400	-	-	2개교
10.학교 역사의 벽 만들기 지원	264	420	156	59.1	22개교→35개교
11.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000	1,200	200	20	119개교→160개교
12.유아교육 지원	820	820	-	-	135개 유치원
13.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3,608	3,444	△164	-	공립초 82개교(선정완료)
14.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1,288	1,080	△208	△16.1	45개교→36개교(선정완료)
15.학교 평생교육 지원	540	735	195	36.1	144개교→157개교
16.글로벌 문화학교 지정·지원	200	200	-	-	16개교
17.학교 현장체험버스 지원	210	420	210	100	교육지원청 1개→2개
18.학교생태정원 가꾸기	-	1,000	1,000	100	31개교
19.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강화	-	782	782	100	168학급
20.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신규)	-	750	750	100	10개교
21.중학교 예술활동공간 조성(신규)	-	1,908	1,908	100	45개교
22.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신규)	-	700	700	100	22개소
23.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신규)	-	3,500	3,500	100	20개교
24.이재민수용시설학교 내진보강(신규)	-	1,980	1,980	100	20개교
25.학교CCTV교체(신규)	-	1,535	1,535	100	13,100대
26.시민생활체육을 위한 학교개방지원(신규)	-	1,000	1,000	100	186개교
27.우리마을 역사탐방 지원(신규)	-	200	200	100	50개교
28.전환기 학부모교육 지원(신규)	-	200	200	100	24개 기관
특별교육지원사업(1)	4,172	5,768	1,596	38.3	교육지원총액의 10%

3) 민간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항	목				
합계		4,006	5,274	△1,268	△24.0
민간이전수입		4,006	5,274	△1,268	△24.0
	기타지원금	4,006	5,274	△1,268	△24.0

- 금번 민간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12억 6천 8백만원이 감소한 40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017년도 민간이전수입에는 교육청이 지난 2012년 11월 28일 농협과 체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른 지원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이는 동 약정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라 하겠음.²⁸⁾

[표19] 2013~2017년 교육금고 지원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농협교육금고 지원금	750	1,810	1,210	1,210	-

다. 자체수입(예산서 67~123pp, 사업별 설명자료 17~39pp)

(단위: 백만원, %)

과목		예산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감 ③=①-②	증감율 (③/②)
관	항				
합계		162,107	149,127	12,980	8.7
교수-학습활동수입		122,642	130,403	△7,761	△6.0
	기본적교육수입	120,275	128,247	△7,972	△6.2

28)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추진계획(안)」에 따라 2016년 12월 9일 신규 교육금고에 대한 약정체결을 예정하고 있음.

	입학금	64	67	△3	△3.5
	수업료	117,748	127,889	△10,141	△7.9
	지난년도수업료	2,462	291	2,171	744.9
	선택적교육수입	2,367	2,156	211	9.8
	기숙사및급식	917	774	143	18.5
	평생학습수입	1,450	1,382	68	5.0
	행정활동수입	5,176	5,300	△124	△2.4
	사용료및수수료수입	5,176	5,300	△124	△2.4
	사용료수입	4,606	4,265	341	8.0
	수수료수입	570	1,035	△465	△45.0
	자산수입	13,718	753	12,965	1,722.7
	자산임대수입	430	451	△21	△4.5
	임대료수입	430	451	△21	△4.5
	자산매각대	13,288	302	12,986	4,300.4
	토지매각	13,280	288	12,992	4,518.7
	기타유형자산매각	2	1	1	41.3
	무형자산매각	6	13	△7	△55.3
	이자수입	4,066	3,075	991	32.2
	금융자산회수	0	5	△5	순감
	기타수입	16,505	9,591	6,914	72.1
	제재금수입	537	511	26	5.1
	변상금	267	241	26	10.7
	위약금	21	32	△11	△34.4
	연체료	138	148	△10	△7.1
	과태료	112	90	22	24.4
	기타수입	14,594	8,583	6,011	70.0
	생산물매각대	2	1	1	108.3
	그외수입	14,592	8,582	6,010	70.0
	과년도수입	1,373	497	876	176.2

- 금번 교육청의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29억 8천만원이 증가한 1,621억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먼저 교수-학습활동수입 중 기본적교육수입은 학생수 자연감소분으로 인하여 수업료가 101억 4천 1백만원이 감소한²⁹⁾ 1,177억 4천 8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보다 79억 7천 2백만원이 감소한 1,202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행정활동수입은 전년도 보다 1억 2천 4백만원 감소한 51억 7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수입과 이자수입은 각각 전년도 보다 129억 6천 5백만원, 9억 9천 1백만원 증가한 137억 1천 8백만원과 40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중 자산수입 증대는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잡종재산) 중 토지를 매각하여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대한 것으로, 2015년도말 현재액 기준으로 잡종재산 총 규모는 1,927억 9천 6백만원인 바,³⁰⁾ 향후에도 교육청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거나 교환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산수입의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를 통한 임대수입의 경우도 사용료의 적기 부과에 따른 임대 수익 증대와 무단점유에 대한 신속한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로 세입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60억 1천만원 증가한 145억 9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과년도 인건비 등 지출금 중 각종 사유로 발생하는 반납액으로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면밀한 추계를 통해 인건비 과오납에 따른 과도한 반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9) 학생수가 일반고는 5,506명, 특성학교는 1,371명, 방송통신고는 507명 감소하였음.

30) 「2015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기준.

라. 차입 및 기타(예산서 pp125~143, 사업별 설명자료 pp43~45)

1) 지방교육채

(단위: 백만원, %)

과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관	항	①	②	③=①-②	(③/②)
지방교육채		270,516	423,177	△152,661	△36.1
	지방교육채	270,516	423,177	△152,661	△36.1
	금융기관차입금	270,516	423,177	△152,661	△36.1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 「지방자치법」 제124조³¹⁾, 「지방재정법」 제11조와³²⁾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정한 사업에만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정재원임.
- 금번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개선으로 2,705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현재 교육청의 부족한 재정수입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채의 발행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31)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32)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특히, 금번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과 같은 시설사업비를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과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이분화하여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나 이마저도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부득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물론 금번 지방교육채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그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 상환하는 것이지만 동 상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교육청이 집행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규모가 잠식되어 필수사업을 위해 지방교육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방교육채가 동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달리 사업비 충당을 위한 재정보전 성격으로 운영된다면 지방교육재정의 악화와 불안정성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전년도이월금

(단위: 백만원, %)

과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관	항	①	②	③=①-②	(③/②)
전년도이월금		311,864	187,428	124,436	66.4
	순세계잉여금	311,864	187,428	124,436	66.4
	순세계잉여금	311,864	187,428	124,436	66.4

-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3,118억 6천 4백만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추계액을 반영한 결과 전년도 보다 1,244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³³⁾에 따라 결산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음.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편성은 최근 수년간의 결산추이와 예비결산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재정지출 과부족에 따라 임의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³⁴⁾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과다계상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임.

[표20] 2013~2017년 순세계잉여금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본예산	150,000	250,000	0	187,428	311,864
추경예산	304,384	88,494	125,696	319,104	

- 이에 따른 교육청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연평균 1,468억 5천 7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같은 기간 교육청의 세입예산 평균 규모 7조 6,249억원³⁵⁾ 대비 약 1.9%

3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34)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4p.

35)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1p.

수준에 해당함.

그러나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 8조 1,477억 2천 5백만원 대비 3.8%에 해당하여 4년간 평균치의 2배에 해당하는 과대 편성이라 하겠음.

- 다만 교육청의 이러한 예산편성은 교육복지사업 등의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의 필요성으로 인해 세수 부족에 대비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결산 전 세입이입제도를 활용한 경우라 하겠는바, 동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5. 세출예산 검토

가.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464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8조 1,477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내역별로 인건비 5조 3,744억 3천 4백만원, 기관운영비 408억 8천 1백만원, 학교운영비 7,504억 8천 8백만원, 교육사업비 1조 3,862억 9천 5백만원, 시설사업비 4,017억 7천 7백만원, 지방채 및 BTL상환 1,861억 2천만원과 예비비 77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음.

[표21] 2015~2017년 사업별 총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건비	5,177,025	67.3	5,304,665	66.3%	5,374,434	66.0%
기본 운영비	699,598	9.0	38,373	0.5%	40,881	0.5%
교육 사업비	1,289,336	16.8	706,141	8.8%	750,488	9.2%
시설 사업비	381,357	5.0	1,014,154	12.7%	1,386,295	17.0%
지방 교육채 등	135,061	1.8	495,781	6.2%	401,777	4.9%
예비비 및기타	7,714	0.1	182,306	2.3%	186,120	2.3%
계	7,690,091	100	259,867	3.2%	7,730	0.1%

○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및 복지사업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 보다 3,857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7조 2,556억 2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85.9%보다 3.2% 증가한 89.1%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음.

다만 금번 세출예산안의 경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3,554억 8천 5백만원이 미편성 되었음을 고려할 경우 세출예산의 경직화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음.³⁶⁾

36)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포함할 경우 전체 세출예산 대비 경직성 경비 비율은 89.5%로 증가하게 됨.

[표22] 2014~2016년 경직성 경비와 비경직성 경비

(단위: 백만원)

구분	성 질 별		2015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	2017년 본예산안
경직성 경비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187,464	4,258,022	4,315,036
		사립학교인건비	989,562	1,046,643	1,059,398
		계	5,177,026	5,304,665	5,374,434
	기관운영비		35,926	38,373	40,881
	학교 운영비	공립학교운영비	601,203	642,936	682,229
		사립학교운영비	62,469	63,205	68,259
		계	663,672	706,141	750,488
	복지사업비		936,523	638,347	903,705
	지방교육채 및 BTL		135,061	182,306	186,120
	계		6,948,208	6,869,832	7,255,628
비경직성 경비	교육사업비 (복지사업, 무기직제외)		352,813	375,806	482,590
	시설비	급식시설	20,606	32,331	33,604
		일반시설	170,008	269,700	271,735
		학교신설	190,742	193,750	96,438
		계	381,356	495,781	401,777
	예비비		7,714	259,867	7,730
계		741,883	1,131,454	892,097	
총 계			7,690,091	8,001,286	8,147,725

[표23] 2013~2017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증감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전체예산	시설사업비(A)	교육사업비(B)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A/B)
2013	7,368,893	335,618	1,174,157	28.6
2014	7,439,129	267,414	1,534,776	17.4
2015	7,690,091	381,357	1,289,336	29.6
2016	8,001,287	495,781	1,014,154	35.2
2017	8,147,725	401,777	1,386,295	29.0

- 사업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1.9%에 해당하는 1조 7,880억 7천 2백 만원이 편성됨.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940억 4백만원 감소한 4,017억 7천 7백 만원이, 교육사업비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3,721억 4천 1백만원 증가한 1조 3,862억 9천 5백 만원이 편성되었음.

- 금번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비중은 29.0%로 전년도 35.2% 보다 6.2% 감소하였음. 이는 시설사업비 중 학교신증설비가 전년도 보다 973억 1천 2백만원 감소하였고 교육사업비가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다만 세입예산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환경개선 등의 시설사업비 대부분이 지방교육채(2,705억 1천 6백만원) 발행을 통해 충당되는 상황에서 자체재원을 교육사업비에 집중하여 편성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교육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정된 예산이 특정 사업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자원배분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와 국회에 세입 관련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세입재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³⁷⁾

37) 최근 4년간(2013~2016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평균은 27.7%로 무상급식,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의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인하여 시설사업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나. 성질별 예산

1) 인건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	증감률	비 고	
공 립	교원 인건비 (42,738명)	보 수	2,871,627	2,817,848	53,779	1.9%	○ 기본급3.5%, 호봉승급분 반영 ○ 정원 : 597명 감소
		법정부담금등	691,977	727,508	△35,531	△4.9%	○ 법정부담금 비율 : 0.4744% 감소 ○ 명예퇴직 수요조사 인원 : 542명 ○ 맞춤형복지비(350천원→450천원)
		소 계	3,563,604	3,545,356	18,248	0.5%	
	교육 전문직 인건비 (475명)	보 수	41,112	39,915	1,197	3.0%	○ 기본급 3.5%, 호봉승급분 반영
		법정부담금등	10,175	10,069	106	1.1%	○ 법정부담금 비율 : 0.4744% 감소 ○ 맞춤형복지비(350천원→450천원)
		소 계	51,287	49,984	1,303	2.6%	
	지방 공무원 인건비 (6,777명)	보 수	372,543	362,396	10,147	2.8%	○ 기본급 3.5%, 호봉승급분 반영
		법정부담금등	99,452	99,034	418	0.4%	○ 법정부담금 비율 : 0.4744% 감소 ○ 맞춤형복지비(350천원→450천원)
		소 계	471,995	461,430	10,565	2.3%	
	정규직인건비(49,990명)		4,086,886	4,056,770	30,116	0.7%	
계약제 교원 인건비 (4,361명)	보 수	188,705	164,130	24,575	15.0%	○ 기본급 3.5% ○ 편성인원 : '16년대비 511명 증가	
	법정부담금등	33,319	30,105	3,214	10.7%		
	소 계	222,024	194,235	27,789	14.3%		
계약제 직원 인건비 (80명)	보 수	1,729	1,443	286	19.8%	○ 2017년 생활임금 적용 (일단가 64,320원)	
	법정부담금등	786	1,114	△328	△29.4%	○ 교통보조비(처우개선수당) : 해당사업 인건비로 편성 ○ 실수요 인원으로 편성인원 조정 : 170명(16년 대비 △30명)	
	장애인고용 의무제운영	3,611	4,461	△850	△191%	○ 법정의무고용률 이행으로 장애 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대폭 감 소	
	소 계	6,126	7,018	△892	△12.7%		
계약직인건비(4,441명)		228,150	201,253	26,897	13.4%		
계(54,431명)		4,315,036	4,258,023	57,013	1.3%		
사 립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7,377명)	1,059,398	1,046,642	12,756	1.2%	○ 사립학교 291교, 인원 17,377명 - 교 원 : 15,742명 - 사무직원 : 1,635명 ○ 명예퇴직 -교원(186명), 사무직원(10명)	
합 계(71,808명)		5,374,434	5,304,665	69,769	1.3%		

- 금번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697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5조 3,744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³⁸⁾ 이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규모로 기본급 인상분(▲3.5%), 호봉승급분(▲1.6%), 맞춤형복지비 증가 및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수당 추가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³⁹⁾

인건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66.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경직성 경비 중 74.1%의 비중)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원 인건비가 3조 5,636억 4백만원이고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512억 8천 7백만원이며,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4,719억 9천 5백만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2,220억 2천 4백만원, 계약제직원 인건비 61억 2천 6백만원이고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는 1조 593억 9천 8백만원 편성되었음.

[표24] 2015년도 인건비 결산⁴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예산현액	2015년 결산액	불용액	불용률	
인 건 비	공 립	교원	3,492,595	3,465,448	27,147	0.78
		교육전문직	44,992	44,663	329	0.73
		지방공무원	430,524	429,562	962	0.22
		정규직소계	3,968,111	3,939,673	28,438	0.72
		계약제교원	190,170	181,675	8,495	4.47
		계약제직원	8,200	6,650	1,550	18.91
		비정규직소계	198,370	188,325	10,045	5.06
	계	4,166,481	4,127,998	38,483	0.92	
사 립	인건비재정 결함지원	994,898	991,629	3,269	0.33	
합계		5,161,379	5,119,627	41,752	0.81	

38) 2017년도 보통교부금 교직원인건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5조 5,497억 1천 3백만원임.

39) 2016. 9. 8. 「서울특별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서」 제7조 정기상여금 신설.

40) 2016년도 인건비 결산 전망은 [붙임4] 참고.

-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인건비 불용액은 417억 5천 2백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81%임.

이는 전체 불용률 1.62%보다 개선된 수준이라 하겠지만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직원 인건비의 불용률은 전체 불용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목이므로 좀 더 정확한 예산추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25] 2016년도 교육공무직 인력운영 현황(2016.4.1기준)⁴¹⁾

(단위: 명, %)

구분	무기계약 (A)	기간제				총 인원 (F=A+E)	무기계약 전환률 (G=A/F-B-D)×100	
		1년미만 (기간미도래) (B)	1년이상 (전환대상) (C)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D)	소계 (E=B+C+D)			
공 립	유	1,025	156	11	56	223	1,248	98.9
	초	7,650	247	13	2,274	2,534	10,184	99.8
	중	3,633	92	15	224	331	3,964	99.6
	고	1,267	195	11	200	406	1,673	99.1
	특수	230	15	1	22	38	268	99.6
	기관	241	124	5	276	405	646	98.0
	계	14,046	829	56	3,052	3,937	17,983	99.6
사 립	초	229	129	41	238	408	637	84.8
	중	537	290	103	177	570	1,107	83.9
	고	1,221	675	197	592	1,464	2,685	86.1
	특수	326	62	21	38	121	447	93.9
	계	2,313	1,156	362	1,045	2,563	4,876	86.5
합 계	16,359	1,985	418	4,097	6,500	22,859	97.5	

※ 교육공무직 직종별 현황은 [붙임5] 참고.

41) 법률상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거, 만55세 이상 고령자, 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한시사업 종사자 등

[표26] 2014~2017년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수당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별	목적사업비로 지급되는 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비, 교통보조비)	인건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수당	합계
2014	36,327	6,197	42,524
2015	50,380	18,628	69,008
2016	50,186	26,251	76,437
2017	39,230	62,079	101,309

※ 인건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수당

- (2014~2016) 급식비, 명절휴가보전금, 기술정보수당(영양사), 특수업무수당(중사서, 초등사서실무사), 위험근무수당(조리종사원), 직무관리수당(영양사), 조리사가산금(조리사)
- (2017) 기존 인건비 포함수당 + 정기상여금 신설, 교통보조비 추가

※ 교통보조비

- 교통보조비는 2016년까지 목적사업비로 지원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인건비에 포함되어 지원

○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14년까지 교육부장관이 산출한 기준인원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 중 교육부가 선정한 시·도 교육청 공통직종(13개)에⁴²⁾ 대하여만 보통교부금 측정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기존의 13개 직종 외에 일부 직종인원을 기타직종 인원에 포함하여 총액인건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음.⁴³⁾

그러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원관리 직종보다 많은 25개 직종을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음.

42) 교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 사무(행정)보조, 시설관리직, 돌봄전담사, 통학차량보조, 특수교육보조,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43) 공무원 및 사무직원 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단가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산정되는 것으로, 2017년 보통교부금 공무원 및 사무직원 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은 2,296억 3천 8백만원임.

[표27] 무기계약직종 지정을 위한 업무분석 시행(2012. 2.20.)

총 직종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직무분석 결과			직무분석제외 [학교자체 고용직종]
	분석대상	상시.지속적 (전환대상)	일시.간헐적 (전환제외)	
65	48	23	25	17

※ 2012년 직무분석 대비, 무기계약 대상 직종 추가(현 25개 직종)

- 조리종사원이 조리사, 조리원으로 직종 분리
- 교무행정지원사 직종 추가

※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

전환제외 직종 수	무기계약 전환제외 사유별							
	사업완료 기간정함	고령자	실업자 대책	교원대체 인력	초단시간 근로자	체육선수 및 지도자	향후 업무량감소 (사수유발유형)	봉사자 (위촉직)
25	5	1	1	5	4	1	5	3

[표28] 교육청의 정원 책정대상 직종

번호	직종명	번호	직종명
1	구 학부모회직원	14	유치원에듀케어강사
2	교육실무사[교무]	15	유아교육사
3	교무행정지원사	16	영양사
4	유치원교육실무사	17	조리사
5	교육실무사[과학실험]	18	조리원
6	교육실무사[실습]	19	초등돌봄전담사
7	교육실무사[사서]	20	특수교육실무사
8	중학교 사서	21	특수에듀케어강사
9	교육실무사[전산]	22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10	사무행정실무사	23	전문상담사
11	프로젝트조정자	24	학부모상담사
12	지역사회교육전문가	25	수련지도사
13	유아교육복지전문가		

[표29]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산정식⁴⁴⁾

분야	직종	대상		산식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교무	교무 보조	유(단설),초, 중,고,특수	유(단설),초, 중,고,특수	학교당 1명 배치, 학생수 60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배치 3학년 이상 병설유치원에 1명 배치(특수 학급 제외)	학교당 1명 산정 학생수 80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산정 3학년 이상 병설유치원에 1명 산정(특수 학급 제외)
	과학 보조	초,중,고	초,중,고	학생수 7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학생수 7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전산 보조	고	고	학생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학생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사서 (보조)	초,중,특수	초,중,특수	도서관(실) 설치학교를 기준으로 사서 교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배치, ※ 학생수 100명이하 학교(초),600명이하 학교(중, 고등학교 제외	도서관(실) 설치학교를 기준으로 사서 교사(정규직원) 미배치교에 1명 산정, ※ 학생수 300명이하 학교(초),600명이하 학교(중, 고등학교 제외
행정	사무 보조	초,중,고	초	학생수 6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학생수 65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학부모회 직원	중,고	중,고	학생수 2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치	학생수 2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학생	특수교육 보조	유(단설),초, 중,고,특수	유(단설),초, 중,고,특수	1급 장애학생 20명당 1명 배치(전체규모) 특수학급 2학급당 1명 배치(전체규모)	1급 장애학생 20명당 1명 산정(전체규모) 특수학급 2학급당 1명 산정(전체규모)
급식	영양사	유(단설),초, 중,고,특수	유(단설),초, 중,고,특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영양사(정규직 원) 미배치교에 1명 배치 ※ 학생수 40명 이하의 학교 제외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영양사(정규직 원) 미배치교에 1명 산정 ※ 학생수 40명 이하의 학교 제외
	조리사	유(단설),초, 중,고,특수	유(단설),초, 중,고,특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조리사(정규직 원) 미배치교에 1명 배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조리사(정규직 원) 미배치교에 1명 산정
	조리원	유(단설),초, 중,고,특수	유(단설),초, 중,고,특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조리원(정규직원) 미배치교에 학생수 99명이하(공동조리교포함)는 1명 배치, 100~149명은 2명, 150~299명은 3명 300~449명은 4명 450~649명은 5명 650명이 상은 280명당 1명 추가, 1210명 이상은 300 명당 1명 배치하되, 1810명 이후는 10명으로 배치	단독조리교수를 기준으로 조리원(정규직원) 미배치교에 학생수 99명이하(공동조리교포함)는 1명 산정, 100~149명은 2명, 150~299명은 3명 300~449명은 4명 450~649명은 5명 650명이 상은 280명당 1명 추가, 1210명 이상은 300 명당 1명 산정하되, 1810명 이후는 10명으로 산정
	배식 보조	초,중,고,특수	초,중,고,특수	비조리학교 중 3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배 치	비조리학교 중 1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복지	전문 상담사	초,중,고	초,중,고	초등학교당 0.4명/중,고등학교당 0.45명 배치(전체규모) Wee센터 설치 개수당 5명 배치	초,중,고등학교당 0.2명 산정(전체규모) Wee센터 설치 개수당 3명 산정
	돌봄 전담사	초	초	학생수 20명당 1명 배치	돌봄교실 학급당(학생수 20명 기준) 1명 산정
기타	기타		초,중,고		학생수 800명 이상의 학교에 1명 산정

※ 국립학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학교), 사립유치원, 분교장 제외

44) 「'15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참고.

- 다만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수당 신설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산정한 13개 직종의 인건비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학교회계로 전출되고 있는 바, 동 직종의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가 증가할 경우 일선학교의 자율적인 교육사업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교육공무직 인건비의 증가는 지방교육재정 전체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교육청은 총액인건비의 범위에서 학교별 실수요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적정인원의 정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2) 운영비

가) 기관운영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기관수	2017년	2016년	증감	증감률	비 고
본 청	1	5,797	5,220	577	11.1	○ 시설관리용역비인상 등 : 140 ○ 일반수용비 : 437 - 버스교체, 공공요금인상 등
교육지원청	11	8,052	7,659	393	5.1	○ 시설관리용역비 인상 등: 283 ○ 특색사업비 인상 : 110
도서관및 평생학습관	21	14,416	13,227	1,189	9.0	○ 인건비 인상 : 183 ○ 공공요금인상 등 : 1,006
사 업 소	8	12,616	12,267	349	2.8	○ 시설관리용역비인상 : 122 ○ 인건비 인상 : 90 ○ 교육연수원 연수지원센터 운영 : 63 ○ 과학전시관 네트워크교체 : 74
합 계	41	40,881	38,373	2,508	6.5	

- 기관운영비는 시설관리용역비 인상, 공공요금인상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억 8백만원이 증가한 408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학교운영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6년	증감	증감률	비 고
공립	682,229	642,936	39,293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1,174교 (유 209, 초 560, 중 273, 고 117, 특수 8, 각종 7) ○ 학교경비제도개선 용역료 : 5,109백만원 ○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 8,950백만원 ○ 학교평등예산 : 3,600백만원
사립	68,259	63,205	5,054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126교 (중 108, 특수 18) ○ 학교경비제도개선 용역료 : 1,541백만원 ○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 1,900백만원 ○ 학교평등예산 : 500백만원
합계	750,488	706,141	44,347	6.3	

○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443억 4천 7백만원이 증가한 7,504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공립학교운영비의 경우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6,822억 2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사립학교운영비(운영비재정결함지원)는 전년대비 8.0% 증가한 682억 5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운영비는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비로서 학교별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 비용이나 시설 관리·유지비, 냉·난방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도서관 운영비, 각종 행사비, 정보화용품비, 교직원 연수비, 급식실·화장실 보수 등에 사용되는 경비임.

학교운영비는 교육환경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비용이지만,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의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세출재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그동안 전체 세출예산의 8% 내외의 비용만을 편성하여 왔음.

○ 교육청은 2017년 학교운영비 편성에 있어 목적사업비 중 학교운영비로 전환 가능한 사업 예산을 학교기타운영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였는바, 이는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⁴⁵⁾

다만 교육부가 기준재정수요액 인건비로 산정하는 13개 교육공무직의 인건비의 경우 금번 학교기본운영비 증가분의 43.4%(192억원)에 달하고 있는바,

인건비와 같은 정상적 경비의 증가는 결국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접교육비의 규모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됨.

-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단위의 특정사업수요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거점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 등과 같은 특정사업의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가 아닌 학교기타운영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사업비

가) 교육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289,336	100	1,014,154	100	1,386,295	100
무상급식	286,552	22.2	286,570	28.3	289,182	20.9
누리과정	342,922	26.6	328	0.0	236,308	17.0
교과서및학비	149,690	11.6	185,919	18.3	196,922	14.2
초등돌봄	39,959	3.1	40,468	4.0	51,870	3.7
방과후학교	33,934	2.6	34,757	3.4	36,197	2.6
외국어교육	37,240	2.9	32,507	3.2	28,262	2.0
특수교육	23,177	1.8	25,219	2.5	23,859	1.7
유아교육	41,145	3.2	38,443	3.8	41,157	3.0
특성화고교육	9,679	0.8	27,054	2.7	26,273	1.9
교육과정운영지원	45,392	3.5	58,315	5.8	89,009	6.4
평생직업교육	18,454	1.4	20,137	2.0	24,296	1.8
영재교육	3,419	0.3	3,402	0.3	3,619	0.3
기타사업비	257,773	20.0	261,035	25.7	339,341	24.5

45) 특히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및 교원연구비를 비롯한 안성맞춤놀이환경조성(놀이교구지원, 교실청소용역료), 직업교육거점학교운영 등 목적사업비를 학교기타운영비로 편성함으로써 학교기본운영비의 재정운용 부담을 분산시켰음.

- 금번 교육사업비 총 규모는 1조 3,862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21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2016년도 본예산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비 전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금번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비 2,363억 8백만원(부대경비 포함)이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36.7%가 증가하게 된 것임.

금번 예산안의 교육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77.5%에 해당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81.3%를 차지하게 됨.

특히 교육사업비 중 교육복지사업비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육사업비의 약 65.2%에 달하고 있어 사업예산의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표30] 교육사업비 중 복지사업비 편성 내역⁴⁶⁾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학비지원	140,813	15.6%	126,922	13,891	10.9%	95,292	45,522
방과후등교육지원	88,067	9.7%	75,225	12,842	17.1%	86,987	1,080
급식지원	328,844	36.4%	327,833	1,011	0.3%	328,844	0
정보화지원	5,626	0.6%	5,646	△20	△0.4%	5,626	0
교육복지우선지원	47,939	5.3%	43,396	4,543	10.5%	47,938	0
누리과정지원	236,308	26.2%	328	235,980	71945.1%	236,308	0
교과서지원	56,108	6.2%	58,997	△2,889	△4.9%	56,108	0
합 계	903,705	1000%	638,347	265,358	41.6%	857,103	46,602

46) 2017년 교육복지사업비 세부 편성 내역은 [붙임6] 참고.

- 더욱이 교육복지사업비 중 학비지원, 급식지원 및 누리과정지원의 3개 주요 교육복지사업비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업 전체의 78.2%인 7,059억 6천 5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교육사업간에도 예산편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표31] 2014~2017 교육사업비 대비 복지사업비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교육사업비	1,534,776	1,289,336	1,014,154	1,386,295
교육복지	1,076,102	936,523	638,347	903,705
교육사업비의 교육복지비율	70.1	72.6	62.9	65.2

- 교육복지사업은 대부분 시작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사업의 축소나 폐지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지출의 경상적 경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임.
-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은 경직성 경비 및 국가시책 사업 등의 의무지출이 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재원이 부족한 실정인바, 특정 사업에 편중된 예산 편성은 다양한 교육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교육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자원분담기준 개선을 위해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사업 등과 같은 국가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개의 국가재원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청의 재정운영 효율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시설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1,357	100.0	495,781	100.0	401,777	100.0
학교신증설	소계	190,743	50.0	193,750	39.1	96,438	24.0
	학교신설	188,069	49.3	181,822	36.7	85,738	21.3
	교실증축	2,674	0.7	11,928	2.4	10,700	2.7
일반시설개선	소계	170,008	44.6	269,700	54.4	271,735	67.6
	학교시설 증개축	19,299	5.1	29,506	6.0	37,783	9.4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46,118	38.3	233,466	47.1	224,578	55.9
	본청시설관리	179	0.0	353	0.1	239	0.1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1,495	0.4	2,591	0.5	2,794	0.7
	직속기관 시설관리	2,917	0.8	3,784	0.8	6,341	1.6
급식시설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소계	20,606	5.4	32,331	6.5	33,604	8.4
	조리기구교체	12,695	3.3	12,668	2.6	15,155	3.8
	급식시설보수	3,348	0.9	639	0.1	2,520	0.6
	급식시설신증축	4,563	1.2	19,024	3.8	15,929	4.0

- 금번 시설사업비는 교육사업비 대비 28.9%인 4,017억 7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학교시설증개축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일반시설개선비가 전년대비 20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조리기구 교체 및 급식시설보수 등의 급식시설개선비도 12억 7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학교신증설비가 전년대비 973억 1천 2백만원 감소함에 따라 전체 시설사업비 규모는 전년도 보다 940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최근 시설사업비 편성 경향은 인건비, 운영비 및 교육복지사업비 등의 의무지출 증가로 인하여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임.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원투입의 규모, 중요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바, 현재와 같이 특정 영역의 재원 편중이 심화될 경우 가용재원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적기에 제고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교육부의 보통교부금(특별회계 포함) 산정에 있어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유치원 포함) 신·증설비 반영액과 실제 교육청 수요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 매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이를 충당하고 있는바,⁴⁷⁾

결국 현재의 시설사업비 편성체계는 교육부의 산정액과 교육청의 실질 수요액 상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 매년 금융기관차입을 반복하고 있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 확대 등 특단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⁴⁸⁾

따라서 교육청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설사업 지원의 확대를 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 실태조사를 더욱 내실화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7)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산정상의 학교시설비 반영액은 642억 6천 7백만원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상의 교부예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709억 4천 3백만원을 합한 1,352억 1천만원을 교육청의 시설사업비로 수요액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금번 교육청의 시설사업비는 4,017억 7천 7백만원으로 교육부 산정액과 2,665억 6천 7백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교육청은 부족한 시설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2,705억 1천 6백만원을 차입하여 이에 충당하고 있음.

48) 2016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산정시 교육환경개선비 전액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도록 한 바 있음.

4)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	증감률	비 고
지방교육채 상황		81,908	76,447	5,461	7.1%	○ '13년 지방채 원금 및 이자 ○ '14년~'16년 발행 지방채 이자
일시차입금관리		86	86	0	0.0%	
BTL상황	원 금	50,133	46,673	3,460	7.4%	○ 141교 : 초 83, 중 37, 고 21 ○ 사업유형 : 학교신설 31교, 개축 56교, 이전신축 2교, 체육관 52교 ○ 최종완료년도 : 2,032년 (20년 상황)
	이 자	28,319	33,578	△5,259	△15.7%	
	운영비	25,674	25,522	152	0.6%	
	소 계	104,126	105,773	△1,647	△1.6%	
합 계		186,120	182,306	3,814	2.1%	

- 2017년도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황비는 전년도 보다 38억 1천 4백만원이 증가한 1,861억 2천만원이 편성됨.⁴⁹⁾
- 「2016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의 관리채무⁵⁰⁾ 비율은⁵¹⁾ 9.1%로 17개 시·도 교육청 평균 3.4%보다 5.7%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수준임.

그동안 교육청의 채무 감소 노력에 따라 자체부담 관리채무 비율은 전년(10.6%) 보다 1.5% 감소하였으나, 과거 BTL방식으로 추진한 학교 신·증설 및 개축사업으로 여전히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관리채무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⁵²⁾

49) 2016년도 현재 지방교육채 원금잔액은 1조 8,798억 7천 5백만원임.

50) 관리채무란 교육감이 지방교육채 발행한도액 내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 원금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BTL 사업의 임대료를 말함.

51) 관리채무 비율 산식

$$\frac{\text{지방교육채무 잔액}}{\text{세입결산액} - \text{보통교부금 재정결함보전 교부액} - \text{지방교육채 결산액}} \times 100$$

52) 교육청은 2012년 이후 BTL방식의 시설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므로 점진적으로 자체부담 관리채무 비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으나, 상황이 완료되는 2032년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교육청은 신규 부담채무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채무의 계획적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2017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사항

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예산서 828p, 사업별 설명자료 689p)

1) 미편성 경과

[표32] 2017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인 원	단 가	유아학비 및 보육료	방과후과정비	예산액	
어린이집	만3세	41,880	0.29	110,563	35,179	145,742	
	만4세	31,863	0.29	84,118	26,765	110,883	
	만5세	28,408	0.29	74,997	23,863	98,860	
소 계		102,151		269,678	85,807	355,485	
유치원	공립	만3세	2,879	0.11	2,073	567	2,640
		만4세	5,155	0.11	3,712	1,600	5,312
		만5세	6,556	0.11	4,720	2,042	6,762
	사립	만3세	20,031	0.29	52,882	7,773	60,655
		만4세	25,812	0.29	68,143	10,826	78,969
		만5세	26,961	0.29	71,177	10,492	81,669
소 계		87,394		202,707	33,300	236,007	
총 계		189,545		472,385	119,107	591,492	

- 2017년도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전체 소요예산이 5,914억 9천 2백만원으로 교육청 전체 사업예산의 3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사업비로만 한정하더라도 42.7%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단일사업임.

- 교육청은 금번 세출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 3,554억 8천 5백만원을 제외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 2,360억 7백만원만을 편성하였음.⁵³⁾
-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만 3~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2012. 3. 1부터 만 5세 유아 대상 도입 시작)하여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과 관계 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12년 이전까지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만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였지만, 2012년에 유아교육비 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만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되었고, 2013년부터는 만3세 및 만4세의 어린이집 유아까지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

[표33] 2013~2017년도 누리과정 연도별 재원부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어린이집 연령별 지원규모	만3세	국 비	17,134	국 비	30,814	교육비 특별회계	142,576	교육비 특별회계	153,653	교육비 특별회계	-
		서울시	41,149	서울시	38,690						
		교육비 특별회계	89,105	교육비 특별회계	83,342						
	만4세	국 비	13,004	교육비 특별회계	90,956	108,292	교육비 특별회계	114,063	교육비 특별회계	-	
		서울시	31,231								
		교육비 특별회계	67,928								
	만5세	교육비 특별회계	104,069	100,704	90,309	96,745	교육비 특별회계	-			

53)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56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가족정책실 세출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는 교육청이 서울시에 전출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청의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교육청에서 전출될 것을 전제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하겠음.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어린이집 부담 주체별	국비(복지부)	30,138	30,814	-	-	-
	지방비(서울시)	72,380	38,690	-	-	-
	소계 (국비+서울시)	102,518	69,504	-	-	-
	교육비특별회계	261,102	275,003	341,177	364,461	-
	국비+서울시+ 특별회계합계	363,620	344,506	341,177	364,461	-
유치원	교육비특별회계	216,670	248,078	249,732	243,721	236,007
누리과정 (어린이집 +유치원) 합계	국비+서울시	102,518	69,504	-	-	-
	교육비특별회계	477,772	523,081	590,909	608,182	236,007
합 계		580,290	592,585	590,909	608,182	236,007

※ 유아학비부대경비 제외

- 한편 정부는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으로 포함시켰으며, 정부가 2012년 1월 누리과정을 만3세 및 만4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만3세 및 만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2015년부터는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음.

[표34] 누리과정 지원 근거법령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법률	<p align="center"><유아교육법></p> <p>제24조(무상교육) ① <u>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p> <p>③ ~ ④ (생략)</p> <p>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 align="center"><영유아보육법></p> <p>제34조(무상보육)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② (생략)</p> <p>③ <u>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u></p> <p>④ <u>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u></p> <p>⑤ ~ ⑥ (생략)</p>
대통령령	<p align="center"><유아교육법 시행령></p> <p>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1. 유치원</p> <p>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p> <p>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p> <p>② (생략)</p>	<p align="center"><영유아보육법 시행령></p> <p>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u>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u></p> <p>② <u>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u></p> <p>③ (생략)</p>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p>제1조(목적) <u>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u>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u></p>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p>6. 유아교육비</p> <p>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p> <p>1)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u>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은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u></p> <p>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p>	

- 이후 정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015년 5월 1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발표하였고, 10월 6일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지원비를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없으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지난 2016년 9월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9월 9일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누리과정 지원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음.

- 한편 정부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첨예한 갈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자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누리과정 전액을 각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동 특별회계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교육청 소관 사무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금번 예산안에 유치원 교육비만을 편성하게 된 것임.⁵⁴⁾

54) 2017년 교육청별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은 [붙임기] 참고.

2) 정부와 교육청 논란의 주요쟁점

가) 법적 쟁점

- [표35]에서와 같이 유아교육 및 보육의 무상 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로 동 법들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 및 영유아(0~5세)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범위, 무상‘보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는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 영유아를 무상보육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은 누리과정 대상 만 3세 이상 유아 수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반영하여 보통교부금을⁵⁵⁾ 교부하고 있음.

그러나 누리과정지원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원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지 해석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간에 이견을 보이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① 교육청의 입장

- 교육청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 보통교부금은 시·도별 총액이 배분되고, 시·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일반재원으로, 현행법상 교육세 전액 및 내국세의 20.27%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임을 명확히 규정함을 들어 유치원만이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대상인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임.

즉, 유아교육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포함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기관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원 대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임.

- 그 결과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가 무상보육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도 「유아교육법」이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제1조)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을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끼워 넣기를 하고 있어 모법인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소요비용이 약 2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막대한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6항에⁵⁶⁾ 반하는 것이므로 「유아교육

56)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 시행령」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것임.

- 더욱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고 「유아교육법」 제18조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지도·감독권을 갖지 못한 어린이집에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임.

② 정부의 입장

- 이에 대해 정부는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상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과정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누리과정이 교육과 보육의 통합과정이라는 점에서 어린이집을 “사실상의 교육기관”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⁵⁷⁾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대상으로 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 개념에 교육이 포함되므로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매년 보통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으로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도 문제가 없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은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⁵⁸⁾

5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8) 이와 관련한, 감사원의 법률자문용역 결과에서 7곳 중 5곳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2곳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감사원 감사보고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2016. 5).

[표35]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에 대한 입장

쟁점		위법 입장(교육청)	합법 입장(정부)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인지 여부	사무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사무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 사무일 수 있음
	보육의 정의 ⁵⁹⁾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의 정의에는 보육이 유아교육과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임을 명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의 정의에는 어린이집이 '교육을 제공'한다고 규정
	「유아교육법」 제4조의 해석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계방안 운영 등의 규정은 양자(유아교육·보육, 유치원-어린이집)의 명백한 구분을 전제로 함	「유아교육법」에 보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아교육의 의미를 유치원 교육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 보육은 포함관계
	누리과정의 제공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제13조에 따른 '교육과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운영하므로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의 정의가 없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 교육내용을 제공하므로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임

나)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지원 논란

- 이처럼 누리과정 지원 대상에 대해 교육청과 정부의 첨예한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보통교부금이 아닌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누리과정을 편성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앞의 [표11]에서 알 수 있듯 특별회계에 의한 누리과정 지원도 추가적인 재원 확대가 아닌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분⁶⁰⁾ 별도로 분리하여 지원하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같

5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60)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단위: %)

과세표준	세율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
개별소비세액(휘발유, 경유, 프로판, 천연가스, 유연탄, 담배 제외)	30
등유, 중유, 부탄, 부산물 유류	15

은 지원은 교육청의 재정확충과 상관없이 단지 법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됨.

- 특별회계는 단일회계주의 원칙의⁶¹⁾ 예외로,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연계함으로써 특정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나, 과도하게 설치될 경우 ‘재정의 칸막이 현상’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 심화, 유사기능의 중복 수행 위험성, 내부거래에 따른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해와 같은 부작용도 있어 그 신설은 엄격한 판단이 요구됨.⁶²⁾

예를 들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제4조제1호라목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지방교육정책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사업의 운영 지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 특별회계의 재원과 관련하여 교육세는 국내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2011년과 같이 예산 대비 교육세 수납실적이 저조할 경우 사업추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적 지원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
주세액(주정, 탁주, 약주 제외)	10
주세의 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맥주, 증류주류, 일부 기타주류)	30

61) 단일회계주의란 국가의 세입·세출을 하나의 회계로 통일하여 경리하는 원리를 말하며, ‘예산단일주의’ 또는 ‘회계통일의 원칙’이라고도 함. 이는 국가 또는 지방 재정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재정부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62) 현행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을 그 심사 기준으로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라는 특별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세입이라고 할 수 없음.

- 결국 이러한 논란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시행 초기부터 지적인 바와 같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⁶³⁾,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 등의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입법(시행령)에 대한 규범통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⁶⁴⁾

또한 특별회계에 의한 예산 교부는 [표11]에서 보듯 현행 교부체계와 규모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결론

- 현재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분 3,554억 8천 5백만원은 사업비 전체의 19.9%에 해당하며, 교육사업비만을 기준으로 해도 25.6%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임.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할 경우 동 사업비를 국고보조로 지원 받거나 시설사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지 않는 이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별 감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초·중등 교육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교육청은 중앙정부에 현행 법령체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치적·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63) 「헌법재판소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교부결정 및 의무지출 경비 지정 등이 심판대상이라 할 것임.

64)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짐(「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2항).

나. 기타기금적립(예산서 1277p, 사업별 설명자료 1564p)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계	15,931	0	5,909	15,931
기타기금 적립	15,931	0	5,909	15,931

-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신청사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59억 3천 1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동 기금재원은 2017년 자산매각에 따른 자산수입 132억 8천 8백만원과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자산수입 중 기금적립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23억원 및 2016년 하반기 자산수입(약 3억 5천만원) 초과분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임.

다만, 원칙적으로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경상비 상승 및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의 시설사업비 마련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자산매각대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에는 그 규모와 시기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지 변경이 지연되고 있고 12월 8일 예정된 재심의에서 변경 결정의 확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는 점 등에서 시급하게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현안사업지원 포괄사업비(예산서 957p 이하, 사업별 설명자료 1632p 이하)

[표36] 현안사업지원 포괄사업비 연도별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총예산액	재원배분기관별		지원대상	비고
		기관	예산액		
2008	17,000	교육시설과	1,000	공립고	최초도입, 추경편성
		시설관리사업소	2,000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과	3,000	사립고	
		지역교육청(11개)	11,000	관내 유·초·중학교	지역청별 차등배분(학교수, 건물면적)
2009	18,000	교육시설과	2,000	공립고	
		시설관리사업소	2,000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과	3,000	사립고	
		지역교육청(11개)	11,000	관내 유·초·중학교	지역청별 차등배분(학교수, 건물면적)
2010	10,500	교육시설과	1,000	공립고	
		시설관리사업소	500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과	2,000	사립고	
		지역교육청(11개)	7,000	관내 유·초·중학교	지역청별 차등배분(학교수, 건물면적)
2011	1,650	지역교육청(11개)	1,650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지역청별 균등배분
2012	5,500	지역교육청(11개)	5,500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지역청별 균등배분
2013	3,300	지역교육청(11개)	3,300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지역청별 균등배분
2014	2,239	지역교육청(11개)	2,239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지역청별 균등배분
2015	5,500	지역교육청(11개)	5,500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지역청별 균등배분
2016	5,500	지역교육청(11개)	5,500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지역청별 균등배분
2017	5,500	지역교육청(11개)	5,500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지역청별 균등배분

- 현안사업지원 포괄사업비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개선방안 기본계획」(예산법무담당관-3105, 2008.04.25)에 따라 2008년부터 도입한 세출예산으로, 당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은 「긴급시설보수 지원비 집행방안」(교육시설과-6611, 2008.08.01.)을 수립하여 소관 부서(기관)별로 자체 세부계획에 따라 동 사업비를 집행하였음.⁶⁵⁾

65) 현재는 교육지원청별로 포괄사업비 지원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선정심의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이러한 포괄사업비를 55억원 편성하여 각 교육지원청별로 5억원씩 균등배분 하도록 하였음.

다만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운영기준」에서는 투자사업비의 경우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재정투자 사업 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동 포괄사업비와 같이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대상 및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포괄성 예산’은 면밀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교육청의 이러한 포괄사업비는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와 함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는 예산임.

그러나 각 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하는 현안사업지원 포괄사업비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와 달리 일정한 편성·집행 기준이 없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반여건에 따라 자의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음.⁶⁶⁾

특히 11개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연초 또는 연말 등의 특정날짜에 자의적으로 예산 집행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7] 2016년도 교육지원청별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2016.11.기준)

(단위: 백만원)

교육지원청	예산액	집행건수	집행액	잔액	특이사항
동부	500	43	431	69	11월 8일 17건 집행
서부	500	32	470	30	5월 27일 27건 집행
남부	500	39	474	26	
북부	500	48	481	19	6월 13일 29건 집행
중부	500	39	454	46	5월 24일 16건, 10월 21일 12건 집행
강동송파	500	36	418	82	3월 3일 28건 집행

66)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예산액의 0.1%이하로 편성되어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복지지원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거나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에도 집행할 수 없는 등의 일정한 집행 기준이 있음.

강서양천	500	34	478	22	7월 6일 25건 집행
강남서초	500	22	359	141	
동작관악	500	32	439	61	5월 17일 25건 집행
성동광진	500	46	482	18	11월 14일 12건 집행
성북강북	500	29	452	48	2월 2일 9건, 4월 12일 9건 집행

- 따라서 금번 예산안의 현안사업지원 포괄사업비의 경우 그동안의 집행 시기와 대상선정 등을 고려할 때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전략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집행을 저조 사업의 예산 증액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6 본예산	2016 추경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률(%)	명시이월 예상액	2017년 예산안
교과자료개발 보급	144	0	144	46	98	32.1	0	146
교원임용관리	3,215	260	3,475	1,228	2,247	35.3	0	3,702
교육정책홍보	1,689	43	1,810	756	1,054	41.7	0	2,272
교육지원청시 설관리	2,591	132	2,723	1,308	1,415	48.0	0	2,794
기타교육비지 원	1,286	0	1,286	603	683	46.9	0	231
본청시설관리	353	0	462	116	346	25.1	0	239
비상대비계획 및보안관리	88	0	638	69	568	10.9	0	98
사학기관관리	140	0	140	51	90	36.1	0	160
예비비	7,743	2,493	7,706	0	7,706	0.0	0	7,730
일시차입금관 리	87	0	87	0	87	0.0	0	87
학교급식 환경개선	32,331	28,198	79,283	32,549	46,734	41.1	6,786	33,605
학교시설 증개축	29,506	24,002	74,920	26,191	48,729	35.0	4,075	37,783
학교신증설	193,750	-2,570	294,966	104,226	190,740	35.3	71,691	96,438
학생봉사활동 지원	35	0	35	6	30	15.9	0	5

- 2016년도 세출예산 중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세출예산에 증액편성 된 사업은 교과자료개발보급, 교원임용관리, 교육정책홍보, 교육지원청시설관리,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사학기관관리, 학교급식환경개선 및 학교시설증개축의 8개로,

각 사업별 집행률이 25.1~48%로 매우 저조한 형편이지만 금번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전년도 보다 108억 5천 6백만원의 증액 편성되었음.

- 특히 학교급식환경개선 및 학교시설증개축의 시설사업비는 평균 3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예산현액 대비 약 7%의 108억 6천 1백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⁶⁷⁾
- 이처럼 전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의 경우 연례적인 불용 또는 사고이월의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것은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음.

따라서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예산 필요성 및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67) 실제로 금번 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연도 말 교부로 인해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2016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교부된 사업 중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할 경우 천이초 교사신축과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 되었음.

[표38] 2015년 결산결과 불용률 50% 이상 및 2016년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에 대한 세세부사업별 편성 내역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 사업 제외)

(단위: 천원, %)

주관부서	세부사업	사업항목1레벨 (세세부사업)	2015 결산결과		2016 집행내역		2017 예산안 편성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감사관	감사관리	공익신고보상금 제운영	30,900	28,239 (91.39)	31,300	26,000 (83.07)	31,300
교육혁신과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생태환경교육내 실화	130,219	68,882 (52.90)	373,227	302,916 (81.15)	139,400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생활 지도지원	학생인권보호와 학교규칙제개정 지원	13,930	7,108 (51.02)	17,850	10,943 (61.30)	17,850
예산담당관	예산관리	주민참여예산운 영	83,677	49,632 (59.31)	138,687	87,862 (63.35)	138,687
정책안전 기획관	교육정책 기획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64,768	119,296 (72.40)	194,100	130,278 (67.12)	192,700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 및운영지원	학원업무	65,115	46,585 (71.54)	50,625	34,450 (68.05)	61,604
	평행학습 운영지원	서울평생학습축 제	505,000	320,297 (63.43)	15,000	13,471 (89.81)	510,500
학교지원과	사학기관관리	사학기관운영평 가	19,400	15,382 (79.29)	75,300	70,000 (92.96)	76,200
행정관리 담당관	교직원단체 관리	교원노사관리	142,980	105,888 (74.06)	181,391	91,755 (50.58)	374,116
계			1,155,989		1,077,480		1,542,357

7. 주요사업별 검토

가. 외부기관위탁교육과정(사업별 설명자료 180p)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계	471,673	278,470	363,078	193,203
고급관리자과정	146,145	164,750	좌동	△18,605
사무관후보자과정	57,880	17,680	60,680	40,200
한국교원대학교육정책 전문대학원	127,648	86,040	127,648	41,608
전문가양성특별교육(석사) 과정운영	140,000	0	좌동	140,000
대학원 야간위탁교육	0	10,000	좌동	△10,000

- 2017년 외부기관위탁교육과정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4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동 사업의 주요 증액 요인은 “전문가양성특별교육(석사)과정운영” 1억 4천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신규로 편성된 “전문가양성특별교육(석사)과정운영”은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행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은 일정 인원(20명)을 선발하여 MOU를 체결한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려는 것임.

특히 동 사업은 고급관리자과정(4급), 사무관후보자과정(5급 승진 예정자), 한국교원대학교육정책전문대학원(5급) 사업과 달리 직급에 상관없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다만 동 사업의 신규 편성으로 인해 2016년까지 진행되어 왔던 “대학원 야간위탁교육”이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폐지될 예정인바,

“전문가양성특별교육(석사)과정운영”의 경우는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특정대학원에 재학할 경우에만 학비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학원 야간위탁교육”을 통해 학비지원을 받아 왔거나 이미 다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교육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교육청은 동 사업의 2017년도 소요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연간학비로 1인당 7백만원씩 총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 추진일정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7년 3월~4월에 위탁교육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후 5월~6월 중 위탁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생이 입학하는 9월부터 실질적으로 교육비가 지원될 계획이므로 결국 2학기만 지원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7년도 예산으로 연간학비를 전액 편성한 것은 연간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예산 1억 4천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7천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와 더불어 2017년도부터 폐지되는 “대학원 야간위탁교육” 대상 공무원의 경우 동 사업 시행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나. 민간전문가 운영(사업별 설명자료 208p, 279p, 592p, 659p, 930p, 956p, 1022p, 1040p, 1688p)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도
	본예산
계	203,100
민간전문가(협치총괄자문관) 운영	24,600
민간전문가(노동자문관) 운영	19,410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민간전문가 자문료)	4,000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 (학교업무정상화 정책 자문관)	4,000
TEE 인증제 (TEE 활성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운영)	2,500
오디세이학교 지원센터 인건비 (대안교육 민간전문가 인건비)	15,590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 (민간전문가 운영수당)	4,000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 (민간전문가 운영수당)	4,000
서울교육공간 민간전문가 운영	125,000

-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협치총괄자문관 운영 등 9개 부문의 민간전문가 운영 예산으로 2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육청은 지난 2016년 7월 27일 ‘학교의 변신 서울교육공간 디자인 혁신 - 미래형 서울 학교건축 -’을 위해 건축 자문관을 위촉하였는바, 이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교육정책과 접목시켜 참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교육청은 이를 위해 「건축기본법」 제23조와⁶⁸⁾ 국토교통부의 「민

68)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라 서울교육공간 민간전문가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음.

- 다만, 교육청의 민간전문가 참여 구조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15개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교육복지협력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복지에 관한 민간전문가와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노동사건의 자문 및 지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단체행동(쟁의, 집회) 협상 지원 및 점검, 인사·노무 관련 민원 상담 및 처리 등을 위해 공인노무사까지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어 금번 예산안의 노동자문관의 역할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검토와 함께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⁶⁹⁾

더욱이 금번 민간전문가 운영 예산 중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학교 업무정상화 안착 지원,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 및 참여형민주시민교육지원의 경우는 각 사업별 특성이나 자문의 빈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인식되는바, 각 사업별 민간전문가의 자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 교육청의 「민간전문가(노동정책자문관) 운영 계획」에 따르면 노동자문관의 역할은 교육공무직원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자문, 서울시교육청 노·사간 상생 정책 방향 수립 시 자문,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분쟁사항에 대한 극복방안 자문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단체행동(쟁의, 집회) 협상 등과 관련하여서 일정 부분 공인노무사의 역할과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별 설명자료 316p)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계	8,000,000	5,000,000	좌동	3,000,00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8,000,000	5,000,000	좌동	3,000,000

- 금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전년도 보다 30억원이 증가한 80억 원을 편성하였음. 세부적으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가 20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10억원, 학교특별교육지원비가 40억원 및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10억원이 반영되었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되며, 여비, 업무추진비, 교직원 복지지원 및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하고 경상비의 경우도 10%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정한 편성·집행 기준이 있는 재량적 성격의 비용임.

[표39] 2016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 집행 내역(2016.11.08기준)

(단위: 백만원)

재원별	예산현액	지원액	잔 액	2017 예산안	증감액
경상교육지원사업비	725	588	137	2,000	1,275
투자교육지원사업비	200	175	25	1,000	800
공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3,475	2,561	914	4,000	525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600	530	70	1,000	400
계	5,000	3,853	1,147	8,000	3,000

-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의 경우 2016년 예산 현액 대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12억 7천 5백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8억원, 공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는 5억 2천 5백만원 그리고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는 4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표40] 2014~2016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 중 경상교육 및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재원별	2014	2015	2016 (11.8기준)	평균
계	1,149	524	763	812
경상교육지원사업비	814	476	588	626
투자교육지원사업비	335	48	175	186

- 그러나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및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의 경우 2014년 부터 현재까지 평균 집행액이 8억 1천 2백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안에서는 2016년도 예산현액 보다 20억 7천 5백 만원을 증액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그동안의 집행추이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편성으로 생각됨.

더욱이 현재 교육청은 시설사업비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비비와 성격이 유사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과 같은 재량적 성격의 예산을 과대 편성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라.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사업별 설명자료 478p)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원격지백업센터 구축	2,034,378	0	좌동	2,034,378

- 금번 예산안의 원격지백업센터 구축은 나이스, 에듀과인, 업무관리, 기록 관리, 각종 업무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자료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자료를 종합전산센터의 재난·지해에 대비하여 전체 시스템을 백업 후 매월 1회 외부(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소산하여 보관하고 있음(Vaulting).

[표41] 백업 소산 현황

구분	백업 장비	장소	내 용	
1차 백업	디스크기반 백업장비	종합전산센터	운영 장비 장애에 대비 별도의 디스크에 백업 (매일 1회, 저녁 및 주말)	
2차 백업	테이프기반 백업장비	강동송파교육청	재난·재해 시 자료 훼손 대비 백업 테이프에 저장하여 원격지에 보관 (월 1회) ※ 원격지 테이프 소산 백업 내용	
			장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전산실 내 내화금고
			보관자료	기록테이프 660개(월55개씩 12개월분)
			보관주기	1년

※ 현재 백업 방식은 실시간 백업이 아니므로 재해 발생시 자료 유실 발생(1개월 가량)

[표42] 백업 소산 현황(2016.11 기준)

대 상	백업 SW	디스크 백업		테이프 백업	TAPE 수량(개)	용량 (GB)	비고
		방식	주기				
나이스	BX	Full	주말	7일	14	12,951	
		증분	매일				
에듀파인	NetBackup	Full	주말	3일	10	7,632	
		증분	매일				
업무관리	NetBackup	Full	주말	5일	13	25,278	
		증분	매일				
통합백업	BX	Full	주말	4일	16	7,012	방과후학교, 기초학력, 도서관, 에버러닝, 공보서버, 웹메일, 통합홈페이지서버 1번
		증분	매일				
일반업무	TSM	Full	주말	1일	2	687	주전산기, 통합홈페이지서버 4번
		증분	매일				
합 계			최대 3일	최대 8일	55	53,560	(약53TB)

※ 서비스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백업량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 학교보건진흥원 화재 발생(2015.11.2.)에서 알 수 있듯이⁷⁰⁾ 현재의 교육청 백업체계로는 인적재해 및 자연재해 등의 경우 교육정보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교육분야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며, 일정기간 데이터 유실 및 정보시스템의 완전 복구가 불가능하고 서비스 복구에도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종합전산센터의 재난·재해 발생 시 자료 유실을 최소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 실시간으로 백업 가능한 원격지백업시스템의 구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육청이 원격지백업시스템 구축 장소로 교육연수원을 예정하고 있으나 최근 경주 지진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 전역 또는 수도권 전역 등 재해의 유형에 따라 재해권이 광범위하게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70) 머니투데이, '학교보건진흥원 화재... 서울교육청 전산시스템 마비', 2016. 11. 2, 참고.

대상지 결정시 재해발생 후 복구까지 자료 이송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지가 백업 환경 구현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 시스템 유지·관리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한 곳인지 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⁷¹⁾

마. 생태환경교육내실화(사업별 설명자료 544p)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계	139,400	119,940	351,940	19,460
과학실험폐수 및 폐시약처리	95,000	63,340	295,340	31,660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16,800	15,000	15,000	1,800
학교정원가꾸기 운영	21,600	21,600	21,600	-
꽃 관련 활동 자료집 개발지원	6,000	20,000	20,000	△14,000

- 생태환경교육내실화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실험폐수 및 폐시약처리 9천 5백만원,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1천 7백만원, 학교정원가꾸기 운영 2천 2백만원, 꽃 관련 활동 자료집 개발지원 6백만원 등 전년도 보다 1천 9백만원이 증가한 1억 3천 9백만원이 편성됨.
- 다만 동 사업의 2015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1억 3천만원) 대비 불용률이 52.9%(6천 9백만원)로 확인되었고, 2016년 11월 기준으로도 예산현액 3억 7천 3백만원 대비 81.1%인 3억 2백만원이 미집행 상태임.

71) 서울시의 경우 2017년 3월까지 상암데이터센터 내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여 데이터센터 장비 45대, 시민소통기획관 장비 13대, 도시교통본부 장비 309대, 상수도사업본부 87대, 역사박물관 장비 8대를 클라우드 센터로 통합할 예정임.

이와 같이 특정 사업에서 불용률이 반복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인바, 과학실험폐수 및 폐시약 처리와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교육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학교정원가꾸기 운영, 꽃 관련 활동 자료집 개발지원 등의 낭비성 사업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바. 창의융합형과학실험실환경구축(사업별 설명자료 549p)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계	7,191,500	994,700	좌동	6,196,800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7,191,500	994,700	좌동	6,196,800

-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사업은 서울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노후화된 과학실험실을 보유한 99개교를 선정하여 과학실험이 가능한 실험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61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한 71억 9천 1백만원이 편성됨.
- 동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사업비를 일정비율로 대응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1년 대응투자가 중단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 중단되었음.

[표43] 과학실험실 예산 지원 현황(2003~2010)

(단위: 백만원)

구분	실험실수				지원예산			
	초	중	고	계	교육청예산	특별교부금	계	
전체목표물량	849	787	783	2,419				
2003년	당해연도 물량	82	66	16	164	2,449	1,850	4,299
	누적 물량	82	66	16	164	2,449	1,850	4,299
	비율	9.7%	8.4%	2.0%	6.8%	58.1%	41.9%	100%

2004년	당해연도 물량	190	152	65	407	11,390	1,790	13,180
	누적 물량	272	218	81	571	13,839	3,640	17,479
	비율	32.0%	27.7%	10.3%	23.6%	81.5%	18.5%	100%
2005년	당해연도 물량	32	35	110	177	3,370	1,890	5,260
	누적 물량	304	253	191	748	17,209	5,530	22,739
	비율	35.8%	32.1%	24.4%	30.9%	64.1%	35.9%	100%
2006년	당해연도 물량	81	61	111	253	6,846	574	7,420
	누적 물량	385	314	302	1,001	24,055	6,104	30,159
	비율	45.3%	39.9%	38.6%	41.4%	92.3%	7.7%	100%
2007년	당해연도 물량	90	62	83	235	4,870	2,247	7,117
	누적 물량	475	376	385	1,236	28,925	8,351	37,276
	비율	55.9%	47.8%	49.2%	51.1%	68.4%	31.6%	100%
2008년	당해연도 물량	88	83	92	263	7,234	825	8,059
	누적 물량	563	459	477	1,499	36,159	9,176	45,335
	비율	66.3%	58.3%	60.9%	62.0%	89.8%	10.2%	100%
2009년	당해연도 물량	78	59	48	185	4,170	1,275	5,445
	누적 물량	641	518	525	1,684	40,329	10,451	50,780
	비율	75.5%	65.8%	67.0%	69.6%	76.6%	23.4%	100%
학교자체예산, 자치단체지원 등		75	64	64	203			
2010년	당해연도 물량	40	28	27	95	2,282	700	2,982
	누적 물량	756	610	616	1,982	42,611	11,151	53,762
	비율	89.0%	77.5%	78.7%	81.9%	76.5%	23.5%	100%

- 동 사업은 과학교육 기반 확충 및 과학실험실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과학수업이 실험·탐구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와 태도를 신장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⁷²⁾

그러나 2016년부터는 교육청과 정부가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구조에서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어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는 전년도 보다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특히 2003년 사업시행 초기 58.1:48.9였던 자원분담율이 교육청의 수동적 대응으로 사업기간 평균 75.9:24.1까지 상승하고 있었다는

72)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과학탐구실험' 과목이 개설됨에 따라(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교육부는 과학교육 종합계획을(교육부, 2015. 8) 수립하여 과학탐구실험 지원 기반 강화와 교육 질 확보를 강조하게 되었음. 이에 교육청도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중장기('16~'20) 계획(안)'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전체 과학실험실 수(2,595개) 대비 11.4%에 해당하는 297개 실험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음.

점에서 교육청이 금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간의 피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교육부에 재원분담률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사.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사업별 설명자료 592p)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3,099,100	-	좌동	3,099,100

-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을 희망하는 중학교(140교)에 대해 위탁사업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바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30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교육청이 지난 2015년 실시한 ‘서울인성교육 추진 방안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와 교원이 학생들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꼽았다는 점을 고려하여⁷³⁾ 계획된 사업으로

교육청은 중학교 3년 교육과정 중 최소 1학기 이상(총 17시간 이상)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의 종합예술활동에 학생중심 예술체험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임.

- 현재 동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42%인 13억원이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의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 작성, 배역 선정 등을 유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73) 서울시교육청, ‘서울인성교육 추진 방안 설문조사, 2015(교사·학부모 3,584명 대상)

1. 문화예술교육(86.4%)
2.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체제(81.8%)
3. 인성중심 수업 강화(78.2%)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년도 부터는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위탁사업 위주의 사업구조를 고수하기 보다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사업예산을 학교운영비로 편성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동 사업의 경우 2017년에 시범운영 되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학교(384교)의 36.5%인 140교를 사업 희망 대상 학교로 선정하였으나, 실제 교육청의 신청 학교 수가 174교로 조사 되어 예산안보다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습실 시설비의 경우도 희망학교의 9.3%인 13교(공립)만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으나 실제 연습실 구축 희망학교는 166교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수급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는바, 금번 예산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재정운영의 형평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아. 공영형사립유치원운영지원(사업별 설명자료 694p)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지원	1,500,640	-	-	순증

-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지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과 종교계가 운영하는 법인유치원을 공립유치원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공영형사립유치원 2개원을 선정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유아교육에 있어 사립유치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서울시에는 21개의 단설유치원을 포함하여 202개원의 공립유치원과 682개원의 사립유치원이 있으며, 공·사립 포함하여 90,676명의 학생이 현재 재학 중임.

[표44] 2016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 현황(2016.3.10기준)

구 분	유치원수		편성 학급수		학생수		비고
	개	비율(%)	학급	비율(%)	명	비율(%)	
공 립	202	22.9	749	18.3	15,472	17.1	
사 립	682	77.1	3,334	81.7	75,204	82.9	
합 계	884	100.0	4,083	100.0	90,676	100.0	

※ 전국 평균(기관수 대비) - 공립(52%) : 사립(48%)

서울시의 경우 [표44]에서 알 수 있듯 공립유치원의 설립비율이 전체 유치원 수의 22.9%에 불과한 상황이고 공립유치원 수용률 역시 서울시 전체 유치원 학생수의 17.1%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임.

특히 서울시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은 전국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의 평균(5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공·사립유치원 설립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⁷⁴⁾

- 이와 같은 공·사립유치원 설립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단설, 병설)을 신·증설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겠으나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저출산에 따른 출생률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단시간 내의 대규모 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⁷⁵⁾

공익이사배치의 공영형사립유치원에게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운영비

74) 2016 서울시 전체 자치구별 유치원 현황 [붙임8] 참고.

75) 금번 예산안의 유치원 신설은 총 19개원(단설2개원, 병설17개원)으로 220억 4천 8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등을 사립학교 재정결합지원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동 사업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은 ‘생계형’의 1인 기업 형태로 운영된다
는 점에서 정원 미달로 운영이 어려운 몇몇 유치원을 제외하면 과연
사립유치원이 자발적으로 공익이사를 배치하는 법인화에 동참할 것인
지 의문이라 하겠음.

교육청은 이와 같은 신규사업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립유치원측의 공
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실태조사 등 객관적인 수요 파악 없이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바,⁷⁶⁾

동 사업은 사립유치원 운영상의 문제점과 공영형 전환에 대한 사립유
치원측의 입장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자. 교과교실제(사업별 설명자료 846p, 849p, 852p)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계	4,093,690	5,844,830	좌동	△1,751,140
교과교실제선정및관리	63,440	74,580	좌동	△11,140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867,000	2,577,000	좌동	△1,710,000
교과교실제운영비지원	3,163,250	3,193,250	좌동	△30,000

- 2009년 도입된 교과교실제는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따라 교과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금번 예산안의 경우 교과교실제 선정 및 관리 6천 3
백만원, 교과교실제 도입학교 2개교에 대한 시설비 8억 6천 7백만
원, 운영비지원에 31억 6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76) 공영형사립유치원 모델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이나 교육청은 교육감 취임 후 현재까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의 실태조사를 한 바 없음.

[표45] 교과교실제 구축 현황(2016.11.15. 기준)

유형	학교수	구축 현황				구축률(%)
		과목중점형	선진형	선진형전환형	계	
중학교	384	123	53	18	194	50.5
고등학교	318	116	24	6	146	45.9
일반고	186	92	15	4	111	59.7
특수목적고	21	2	1	0	3	14.3
특성화고	70	13	1	0	14	20
자공고	18	7	7	1	15	83
자사고	23	2	0	1	3	13

- 교과교실제는 국가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체제를 벗어나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수업 환경을 조성해 학생 중심의 탄력적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임.

그러나 교과교실제 도입 8년 동안 중학교는 50.5%, 고등학교는 45.9% 정도만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여전히 많은 미구축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또한 실제 교과교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교실은 창의적 공간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차별화되지 않는 수업방식 때문에 이동수업이 축소 운영되는 등 교과교실제 이전의 학년 중심으로 되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음.⁷⁷⁾

따라서 교육청은 교과교실제의 공과를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하여 교과교실제 성과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77) 연합뉴스, '교과교실제 시행 8년만에 흔들...감사했더니 이동수업 축소', 2016. 11. 22.

차. 교학상장(사업별 설명자료 1170p)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교학상장”(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0,000	-	-	110,000

- 금번 예산안의 신규사업인⁷⁸⁾ “교학상장” 사업은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은 55개 동아리에 2백만원씩 총 1억 1천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지역 사회문제 인식, 지역 역사 탐방, 사회적 이슈 등을 주제로 동아리를 구성한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학교 간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에서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그러나 교육청은 이미 이와 유사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영역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

가령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비로, 지정되지 않은 자치구는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비를 활용해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상장 사업과 같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간 통폐합 등의 조정을 통해 불요불급 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이를 면밀히 조사·분석해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78) 2017년 신규사업 내역은 [붙임9] 참고.

카.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사업별 설명자료 1579)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계	1,180,870	100,000	163,300	1,080,870
햇빛발전소설치학교 운영비 지원	440,000	100,000	좌동	340,000
햇빛발전소설치학교 운영비 지원(협동조합형)	300,000	0	0	300,000
자가형 햇빛발전설비 보수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400,000	0	52,000	400,000
햇빛발전소 설치 활성화 연수	12,870	0	2,500	12,870
햇빛발전소 설치 대상학교 현장조사	28,000	0	3,800	28,000
햇빛발전조성사업홍보	0	0	5,000	0

-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는 학교내 유휴공간에(옥상) 태양력전광판을 설치하여 학교수입을 증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동조합형을 포함한 햇빛발전소설치학교 운영비 지원 7억 4천만원, 자가형 햇빛발전설비 보수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비 4억원, 햇빛발전소 설치 활성화 연수 및 대상학교 현장조사비 4천 1백만원 등 총 11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히 햇빛발전소설치학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햇빛발전소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9)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7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용·보급 촉진법」 80)에 따라 사업자가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설치 및 철거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학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겠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햇빛발전소 설치학교에 인센티브 성격의 운영비를 교당 3~4백만원씩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러한 운영비는 목적사업비가 아니어서 결국 학교기본운영비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집행대상을 특정할 수도 없는 실정임.

또한 운영비 추가 지원과 햇빛발전소 설치 간의 인과관계도 객관적으로 증명된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인센티브성 경비를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낭비를 초래하여 교육정책 추진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바,

교육청은 동 예산을 햇빛발전소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와 연수활동 등을 통해 햇빛발전소의 효과성과 교육적 활용가치 등에 대한 인식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8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이하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표46] 햇빛발전소 설치(예정) 현황

■ 자가형 햇빛발전소 설치 현황

설치형태	학교 수	고장 수	고장률(%)
의무	135	7	5.2
자체	39	5	12.8
계	174	14	8.1

■ 협동조합 형태(13) : 설치완료 (3), 설치중(1), 설치추진중(9)

구분	설립별	연도	학교명	설치용량(kw)	진행사항	사업자명	비고
1	공립	2013	상원초	37.20	가동	서울시민햇빛협동조합	설치완료
2	공립	2013	삼각산고	19.00	가동	우리동네햇빛협동조합	
3	공립	2016	누원고 *	19.00	가동	도봉시민사회적협동조합	
4	공립	2015	독산고	50.00	변경허가 (99kw→50kw)	금천햇빛협동조합	설치중
5	공립	2015	인현고	96.00	시의회 심의 (통과)	서울시민햇빛협동조합	설치추진중
6	공립	2015	신림중	74.88			
7	공립	2015	화원중	56.16			
8	공립	2015	면목고 *	92.04			
9	공립	2015	중화고 본관	43.00			
			중화고 창조관	18.00			
10	공립	2015	영원중	50.00	학교운영위원회 (통과)	등근햇빛협동조합	
11	공립	2015	동원중	67.60		서울시민햇빛협동조합	
12	공립	2016	금산초	34.32		등근햇빛협동조합	
13	공립	2016	상계고	100.00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계				757.2			

■ 민간발전사업자형 설치학교 현황

구분	설립별	연도	학교명	발전용량(kw)	사업자명	비고
1	공립	2013	창도초	99.75	(주)나눔발전소	설치완료
2		2014	신명초	76.00	(주)나눔발전소	
3		2014	대명초	99.75	(주)나눔발전소	
4		2014	묘곡초	99.75	(주)나눔발전소	
5		2014	성내중	99.75	(주)나눔발전소	
6		2014	시흥중	100.00	(주)이맥스시스템	
7	사립	2014	광성중	73.78	KS솔라(주)	
8	공립	2015	영남초	79.80	(주)이맥스시스템	
9		2015	탑동초	82.35	탑동햇빛발전소	
계				810.93		

■ 서울시 시범학교 설치 현황

구분	설립별	연도	학교명	발전용량(kw)	사업자명	비고
1	공립	2014	배봉초	74.20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완료
2		2014	수서중	74.20	서울시시설관리공단	
3		2014	문현중	51.67	서울시시설관리공단	
4	사립	2015	수도공고	75.00	서울시시설관리공단	
5	공립	2015	면동초	63.75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계				338.82		

타. LED조명기구 렌탈사업(계속비)(사업별 설명자료 1679p)

(단위 : 천원)

구분	총 사업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이후	비고
계	106,244,457	8,592,519	11,669,744	85,982,194	
LED임차비	105,296,692	8,350,259	11,401,049	85,545,384	절전+재정
설계용역비	947,765	242,260	268,695	436,810	

-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LED조명기구 렌탈사업비 85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러한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비를 총액과 연도별 금액으로 구분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임.⁸¹⁾
- 계속비 사업 대상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는 기존의 백열구, 형광등 등에 비해 전기소비가 적다는 고효율성과 2만 5천에서 5만 시간(약 10~20년)에 달하는 긴 수명, 친환경 등의 장점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임.

81) 계속비가 아닌 일반예산에 과다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표47] LED조명기구 설치 현황

구분	학교수	실수	LED 설치 실수
총 학교수	1,352	126,072	22,969
LED설치진행(완료) 학교수	886	85,653	22,969
LED설치완료 학교수	88	5,890	5,890

※ 설치 진행(완료) 학교수는 설치 완료 학교수를 포함.

- 특히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매년 전기세 과다 지출로 학교운영비 부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전기세 절감 등을 위한 LED조명기구 설치 사업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LED조명기구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플리커 현상의 경우⁸²⁾ 눈의 피로감, 시력저하, 집중력 감소, 어리점증, 무기력,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도 있으므로 렌탈 제품 선정에 있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장애되지 않도록 이러한 점은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파. 학교신증설설계비 편성(예산서 964p, 사업별 설명자료 1546p)

· 신·증설 설계비		1,933,575	천원
- 설계비	1,933,575,000원×1식 =	1,933,575	천원
· 설계 공모 보상금		242,620	천원
- 보상금	242,620,000원×1식 =	242,620	천원

- 학교신증설설계비 편성은 가칭)마곡2중을 포함한 4개교에 대한 설계비 21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교육청은 동 설계비 편성과 관련하여 학교 신·증설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개교 지연 등의 문제

82) 플리커는 조명기기, TV, 모니터 등 조명이 포함된 제품이 1초당 60~120회 깜빡거리는 현상을 말함.

해결을 위해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통과 후 즉시 사업을 진행하여 개교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함.

- 그러나 금번 예산안의 동 설계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가칭)마곡2중 외 다른 3개교에 대해서는 예산서 및 사업별 설명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임.⁸³⁾
- 특히 동 사업과 같은 투자사업비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구분이 명확하고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바, 교육청은 이러한 예산 원칙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위반하여 학교신증설 설계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한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동 설계비는 각 단위학교별로 나누어 명확히 사업내역이 구분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하. 학교안전공제회지원(사업별 설명자료 1596p)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A-B)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계	1,689,706	72,349	좌동	1,617,357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지원	17,706	12,349	좌동	5,357
학교안전공제회지원 (금고협력사업)	0	60,000	좌동	△60,000
공제급여지원	1,672,000	0	0	1,672,000

- 금번 예산안의 학교안전공제회지원은 전년도 보다 16억 1천 7백만원 증가한 16억 9천만원으로,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 1천 8백만원과 공제급여지원 16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83) 교육청은 다른 2개교에 대해 특수학교 신설비 13억 8천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

- 학교안전공제회지원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⁸⁴⁾ 따라 교육청이 부담하는 경비로서 이중 신규로 편성한 공제급여지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를 종료한 후 장애가 있는 경우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한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동 경비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5일 공제료 수입만으로 기금 수지 적자 누적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교육청에 「2017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지원금 예산편성 요청」(경영지원팀-871, 2016. 10. 25)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요청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수 감소로 공제료 수입액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정한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급여 지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금번 예산안과 같이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급액이 큰 장애 및 유족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한 바 있음.⁸⁵⁾

- 그러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기본적으로 공제료 수입과 자체수익사업 등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금번 예산안과 같이 교육청의 보조금 성격 지원은 일시적으로 기금의 누적 적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운용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8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85)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2016. 11, 참고.

특히 서울특별시안전공제회가 소방사업이익금 이외의 자체수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⁸⁶⁾ 학교안전공제회가 수지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에서 공제급여지원과 같은 정상적 성격의 경비를 확대할 경우 교육청의 재량지출 영역을 축소시켜 재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교육청은 공제회의 자체 수익사업계획 등의 수입 개선 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그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계상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 분석도 없이 단순히 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려는 바, 이는 예산의 계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 예산 편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 성인지 예산⁸⁷⁾

(단위 :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2017년도 예산안(A)	2016년도 본예산(B)	전년대비		
				증감(A-B)	증감률	
합 계	28	143,898	128,502	15,396	12.0%	
필수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	61,488	49,647	11,841	23.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25,303	24,258	1,045	4.3%
	교육부지정사업	12	56,968	54,459	2,509	4.6%
선택	자체사업 ^{주1)}	1	139	139	0	0.0%

주1)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86) 「2017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상의 소방사업이익금은 1억 2천만원으로 2017년 전체 수입(177억 9천 9백만원) 대비 0.67%에 불과함.

87) 성인지 예산제도는 호주를 효시로(1984년 “women's budget” 수립)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인도, 필리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지역, 미국, 멕시코, 페루 등을 포함한 아메리카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동안 국가 차원에서만 실시되던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2011. 3. 8 일부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되었음.

- 금번 성인지 예산안은 주민참여예산운영이 자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을 포함하여 전년도 보다 153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28개 사업의 1,438억 9천 8백만원이 편성됨.

[표45] 성인지 예산(안)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17년 예산안(A)	2016년 본예산(B)	전년대비		비고 (주관부서)
			증감(A-B)	증감률	
중등교원연수지원	1,822	1,460	362	24.8%	중등교육과
교장맞기관장임용	74	66	8	12.8%	초등교육과
교원노사관리	374	181	192	106.2%	행정관리담당관
기초학력향상지원	4,306	4,014	293	7.3%	초등교육과
초등수석교사제운영	404	387	17	4.4%	초등교육과
중등수석교사제운영	1,042	1,068	△26	△2.4%	중등교육과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2,041	1,951	90	4.6%	유아교육과
방과후활동지원	4,127	3,932	195	5.0%	학생생활교육과
장애인식개선사업지원	270	270	0	0.0%	학생생활교육과
영재교육담당교원 전문성신장	30	14	16	114.3%	교육혁신과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11,935	14,864	△2,929	△19.7%	중등교육과
영어체험교육지원	1,240	1,349	△109	△8.1%	학생교육원
마이스터고지원	2,940	2,340	600	25.6%	진로직업교육과
취업기능강화특성화교육성	600	600	0	0.0%	진로직업교육과
초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	5,908	5,580	328	5.9%	체육건강과
중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	9,464	9,901	△437	△4.4%	체육건강과
선진운동부육성	406	386	20	5.2%	체육건강과
문화예술지원	7,671	5,518	2,153	39.0%	교육혁신과
청소년단체활동지원	5	35	△30	△85.7%	체육건강과
학교안전망구축	1,352	1,544	△192	△12.4%	학생생활교육과
맞춤식진로교육	3,866	2,832	1,034	36.5%	진로직업교육과
초등돌봄교실운영	51,870	40,468	11,402	28.2%	초등교육과
교육복지특별학교지원	30,854	28,301	2,553	9.0%	참여협력담당관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145	71	74	104.2%	마포평생학습관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318	288	30	10.4%	평생교육과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 운영지원	654	886	△232	△26.2%	진로직업교육과
주민참여예산운영	139	139	0	0.0%	예산관리담당관
학교운영위원회	39	56	△17	△30.4%	참여협력담당관
계	143,896	128,501	15,395	12.0%	

- 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가령 금번 성인지 예산안 상의 교원노사관리(성인지 예산안 62p)의 경우 2016년 성과달성 추정치가 52.1%에 해당함에도 2017년 목표치는 50%로 하향조정하였음. 이외에도 장애인식개선사업지원(성인지 예산안 85p), 청소년단체활동지원(성인지 예산안 124p) 등 성과달성 목표치를 현상유지 또는 하향 조정한 경우가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적 측면의 예산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성과달성 목표치를 전년도 보다 하향조정하거나 현상유지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임.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향후 대상사업의 선정, 분류, 수혜분석, 성과지표 측정방법과 목표치 설정 등 성인지 예산안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예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육감 공약사업 등 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체추진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참고자료

[붙임1]

지방교육재정 확충 관련 법률안 국회 계류 현황

법률안 제명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일자	발의자 및 제출자	주요 개정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6-02	설훈 의원 등 12인	▷내국세: 1만분의 2,027→100분의 25 ▷특별교부금 비율: 100분의 4→100분의 3 ▷보통교부금 비율: 100분의 96→100분의 97
	2016-06-02	김태년 의원 등 15인	▷내국세: 1만분의 2,027→100분의 25 ▷특별교부금 비율: 100분의 4→100분의 2 ▷보통교부금 비율: 100분의 96→100분의 98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100분의 60→100분의 40 ▷보통교부금 산정기일후 특별한 재정수요:100분의 10→100분의 30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 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 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
	2016-06-03	오제세 의원 등 10인	▷교육기관 정의(어린이집 포함) ▷내국세: 1만분의 2,027→1만분의 2,127
	2016-06-03	최도자 의원 등 24인	▷교육기관 정의(어린이집 포함) ▷내국세: 1만분의 2,027→1만분의 2,227
	2016-06-03	주승용 의원 등 12인	▷내국세: 1만분의 2,027→1만분의 2,527
	2016-06-08	권철승 의원 등 10인	▷내국세: 1만분의 2,027→1만분의 2,227
	2016-06-15	윤소하 의원 등 12인	▷내국세: 1만분의 2,027→1만분의 2,127 ▷특별교부금 비율: 100분의 4→100분의 3 ▷보통교부금 비율: 100분의 96→100분의 97

법률안 제명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일자	발의자 및 제출자	주요 개정내용
	2016-06-23	박홍근 의원 등 10인	▷내국세: 1만분의 2,027→100분의 22 ▷특별교부금 비율: 100분의 4→100분의 2 ▷보통교부금 비율: 100분의 96→100분의 98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100분의 60→100분의 40 ▷현재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재해대책 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 배분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2016-06-24	유은혜 의원 등 18인	▷내국세: 1만분의 2,027→1만분의 22.27 ▷특별교부금 비율: 100분의 4→100분의 2 ▷보통교부금 비율: 100분의 96→100분의 98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100분의 60→100분의 40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
	2016-07-08	송기헌 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2.27% ~ 25.27% 사이에서 내국세 수입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016-07-08	김민기 의원 등 12인	▷내국세: 1만분의 2,027→1만분의 23.27

법률안 제명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일자	발의자 및 제출자	주요 개정내용
	2016-07-11	도종환 의원 등 10인	<p>▷특별교부금 사용 잔액을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p> <p>▷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 뿐만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p> <p>▷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내역 등 특별교부금의 운용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p>
	2016-07-18	윤후덕 의원 등 10인	<p>▷특별교부금 비율: 100분의 4→100분의 3</p> <p>▷보통교부금 비율: 100분의 96→100분의 97</p>
	2016-08-26	한선교 의원 등 17인	<p>▷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전액을 제외하도록 함.</p> <p>▷추경예산에 따른 증감 및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발생에 따른 정산 대상에서 교육세분 교부금을 제외하도록 함</p>
	2016-09-21	김두관 의원 등 10인	<p>▷교육기관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함.</p> <p>▷내국세: 1만분의 2,027→100분의 23</p>
	2016-10-13	조승래 의원 등 10인	<p>▷내국세: 1만분의 2,027→1만분의 23.27</p> <p>▷특별교부금 비율: 100분의 4→100분의 2</p> <p>▷보통교부금 비율: 100분의 96→100분의 98</p>
	2016-10-28	이동섭 의원 등 10인	<p>▷내국세: 1만분의 2,027→100분의 24</p>
	2016-11-9	유성엽 의원 등 13인	<p>▷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키도록 함.</p>

법률안 제명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일자	발의자 및 제출자	주요 개정내용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2016-08-26	한선교 의원 등 17인	<p>▷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액 전액, 이 회계 외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p> <p>▷특별회계의 세출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지원,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지방교육정책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사업의 운영 지원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원금 등으로 함.</p>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	2016-10-24	윤소하 의원 등 10인	<p>▷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p> <p>▷특별회계의 세출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운영 지원, 석면제거 및 안전관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함.</p> <p>▷정부는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함.</p> <p>▷교육부장관은 시·도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p>

법률안 제명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일자	발의자 및 제출자	주요 개정내용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2016-11-09	유성엽 의원 등 13인	<p>▷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어린이 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국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세입으로 함.</p> <p>▷특별회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세출로 함</p>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2016-10-15	오영훈 의원 등 10인	<p>▷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7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p> <p>▷특별회계의 세출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방과후학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운영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역의 운영 지원, 교육기관의 석면제품 제거 및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지방교육정책 사업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정책 사업의 운영 지원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원금 등으로 함.</p>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2016-08-05	박홍근 의원 등 10인	<p>▷회계는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함.</p> <p>▷회계의 세출은 학교의 노후교실 개선, 난방시설·화장실 등 부속시설의 개선, 교무실·교원편의시설 등의 확충, 학교 안전시설 확충 등의 사</p>

법률안 제명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일자	발의자 및 제출자	주요 개정내용
			<p>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되는 금액 등으로 함(안 제4조).</p>

[붙임2]

2017년도 보통교부금(특별회계 교부액 미포함) 예정교부액 산정내역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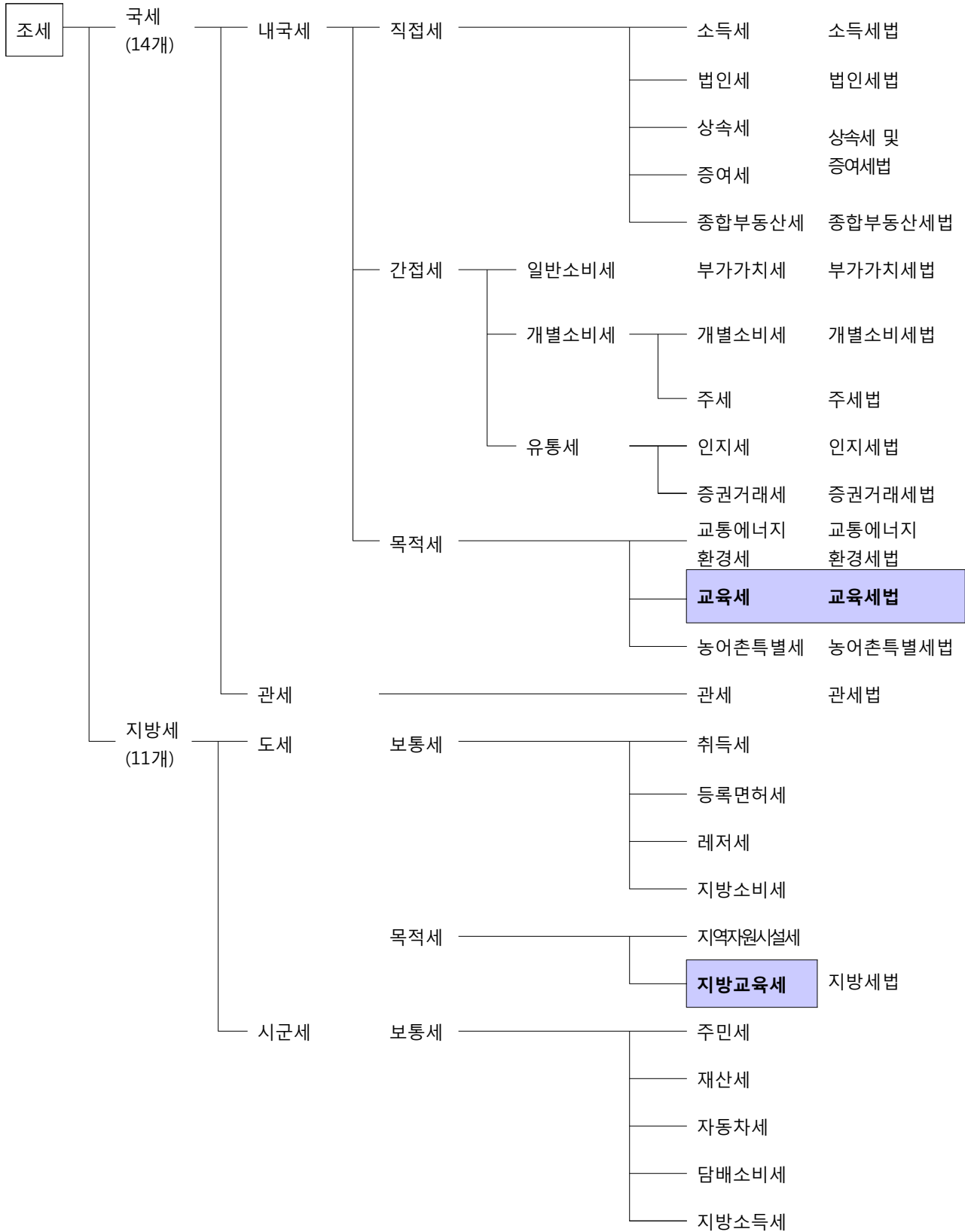
구분	측정항목		
기준 재정 수요액 (B)	합 계		7,432,603,117
	1.교직원인건비		5,549,712,850
		교원	4,492,218,679
		교육전문직원	48,301,026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542,847,099
		공무원 및 사무직원 외의 직원	229,638,284
		교원 명예퇴직('17년 산정액)	222,314,607
		교원 명예퇴직('15년 정산분)	14,393,155
	2.학교·교육과정운영비		1,372,175,163
		가. 학교경비	634,631,088
		나. 학급경비	178,784,900
		다. 학생경비	425,187,800
		라. 교육과정 운영비	106,964,375
		마. 교과교실 운영비(시설비 포함)	9,907,000
		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4,000,000
		사.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
		아. 통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	-
		자. 학교상담실 운영비	1,500,000
		차.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비	11,200,000
	3.교육행정비		116,893,951
		가. 기관운영비	113,713,686
		나. 지방선거경비	3,180,265
	4.교육복지지원비		134,303,484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2,059,915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132,243,569
	5.학교시설비		64,296,997
		가. 교육환경개선비(17년 수요액 중 일부는 특별회계 사업에 반영)	29,312,997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15,399,000
		다.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19,585,000
		라.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
		마. 군단위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이전·개축비	-
		바.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
		사. 기숙사 시설비	-
	6.유아교육비		51,112,646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17년 수요액은 특별회계 사업에 반영)	-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34,738,800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16,373,846	
7.방과후학교사업비('17년 수요액은 특별회계 사업에 반영)		-	
	가.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	
	나. 자유수강권 지원	-	
	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	

	8.재정결함보전	120,476,128
	가. 지방교육채 상환	87,033,128
	나. 민자사업 지급금	33,443,000
	자체노력수요	23,631,898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
	자사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23,000,000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631,898
	합 계	3,785,568,351
기준 재정 수입액 (C)	1.지방세 등 법정전입금	3,389,705,470
	지방교육세전입금	1,623,388,054
	시도세전입금	1,502,884,847
	담배소비세전입금	263,486,2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15년 정산분)	△53,722
	2.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317,347,003
	3.학교용지부담금	-
	4.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17년 산정액)	78,515,878
	세종시 보정(D)	-
	감사결과 반영(E)	-
	정정교부액(F)	9,852,367
	교부할 금액(G=A+B-C+D+E+F)	3,656,887,133

보통교부금 교부액	3,656,887,133
지방채 승인액(교육환경개선비 중 포물러 배분 사업)	270,516,002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교부액	771,295,293

[붙임3]

세목별 조세체계



[붙임4]

2016회계연도 인건비 결산 전망(2016.10.16기준)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원인행위금액	지출금액	불용액	불용율
계약제교원인건비	204,033,475	170,450,110	156,785,559	1,428,234	1
계약제직원인건비	6,765,100	4,651,757	4,608,414	47,356	1
교원인건비	3,506,660,118	3,017,850,309	2,826,379,503	24,546,621	1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9,983,525	38,667,686	36,050,484	349,885	1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025,242,273	875,170,908	814,866,216	0	-
지방공무원인건비	441,134,718	367,052,271	338,269,038	3,087,943	1
계	5,233,819,209	4,473,843,041	4,176,959,214	29,460,039	1

[붙임5]

교육공무직 직종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직종명	공 립						계
		유	초	중	고	특수	행정	
정원관리대상직종	교무행정지원사	96	552	274	117	8		1,047
	교육실무사(교무실무)	23	616	162	100	7		908
	교육실무사(유치원실무)	86						186
	교육실무사(과학실험실무)		559	260	107		11	937
	교육실무사(실습실무)				117			117
	교육실무사(전산실무)		554	3	12		2	571
	사서		1	269	8			278
	교육실무사(사서실무)	2	537	3	15		6	563
	행정실무사	1	14	86	82	2	80	265
	돌봄전담사		1,627					1,627
	유치원에듀케어	743						743
	특수교육실무사	103	374	154	88	110		829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40	40
	특수에듀케어	17				59		76
	영양사	12	75	218	105		3	413
	조리사	11	558	258	45	8	1	881
	조리원	12	2,442	1,216	253	14	21	3,958
	유아교육복지전문가	12						12
	지역사회교육전문가		157	111	3			271
	프로젝트조정자						23	23
	전문상담사		97	154	102		89	442
	수련지도사						69	69
유아교육사						12	12	
학부모회직원			574	224			798	
소 계		1,218	8,163	3,742	1,378	208	357	15,066
정원관리대상제외직종	자율학습감독				80			80
	방과후사무실무사		25	12	3			40
	도서관연장운영인력		4	3			183	190
	시설관리		7	40	60		22	129
	시설기능공						36	36
	청소	21	66	18	45	2	13	165
	당직(방호)		1		1			2
	운전원					14		14
	통학차량실무사					39		39
	배식실무사	9	765	144	72	5		995
	사감			2	26			28
	학교보안관		1,148					1,148
	변호사						3	3
	기타		5	3	8		32	48
소 계		30	2,021	222	295	60	289	2,917
총 계		1,248	10,184	3,964	1,673	268	646	17,983

[붙임6]

2017년 교육복지사업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편성액	비고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40,412,685	
	특성화고장학금지원	42,712,865	
	기타교육비지원	230,640	
	교육급여지원	57,457,224	
	소계	140,813,414	
방과후등교육지원	방과후학교운영	61,733,351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6,334,010	
	소계	88,067,361	
급식지원	학기중급식비지원(무상급식포함)	321,553,755	
	토.공휴일중식지원	7,290,000	
	소계	328,843,755	
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지원	5,625,690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지원활성화	1,331,555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30,853,650	
	마을결합형학교운영지원	255,620	
	마을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	4,960,750	
	학교협동조합활성화지원	133,564	
	혁신교육지구운영	10,403,290	
	소계	47,938,429	
누리과정지원	만3~5세아유아학비	236,006,880	
	유아학비부대경비	301,200	
	소계	236,308,080	
교과서지원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교과서	206,682	
	교과용도서운영	113,707	
	초,중학교교과용도서	55,039,191	
	특수학교교과용도서	219,178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교과서	529,587	
	소계	56,108,345	
합 계		903,705,074	

[붙임7]

2017년 교육청별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억원)

편성 내역	교육청	금액
유치원 교육비만 편성	서울	3,555
	부산	985
	광주	658
	세종	206
	경기	5341
	강원	617
	충북	834
	충남	1094
	전북	762
	전남	911
	경남	1420
	제주	457
	전액 편성	대구
대전		550
울산		1016
경북		1014
일부 편성	인천	693(각 7개월분)

2016 서울시 전체 자치구별 유치원 현황

(2016. 3. 10. 기준)

교육 지원 청	자치구	유치원							단설
		설립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생 수용률	
동부	동대문구	공립	8	32	38	664	20.8	19.6%	1(취경유)
		사립	25	125	219	2,722	21.8	80.4%	
	종랑구	공립	8	32	35	603	18.8	17.8%	1(새솔유)
		사립	26	126	232	2,778	22.0	82.2%	
	소계		67	315	524	6,767	21.5		2
서부	은평구	공립	12	37	41	798	21.6	17.9%	2(진관유, 은빛유)
		사립	36	179	327	3,650	20.4	82.1%	
	서대문구	공립	6	28	29	549	19.6	19.7%	1(북성유)
		사립	22	100	204	2,236	22.4	80.3%	
	마포구	공립	8	26	30	565	21.7	18.9%	
		사립	19	100	208	2,430	24.3	81.1%	
	소계		103	470	839	10,228	21.8		3
남부	구로구	공립	11	41	45	897	21.9	25.6%	1(하늘숲유)
		사립	26	112	211	2,610	23.3	74.4%	
	금천구	공립	4	17	20	349	20.5	21.2%	1(탑동유)
		사립	13	64	128	1,300	20.3	78.8%	
	영등포구	공립	9	27	28	587	21.7	14.6%	
		사립	33	147	284	3,446	23.4	85.4%	
소계		96	408	716	9,189	22.5		2	
북부	도봉구	공립	3	10	10	193	19.3	6.4%	
		사립	27	132	248	2,826	21.4	93.6%	
	노원구	공립	10	34	39	703	20.7	9.7%	1(노일유)
		사립	57	296	495	6,557	22.2	90.3%	
소계		97	472	792	10,279	21.8		1	
중부	용산구	공립	4	13	12	263	20.2	15.1%	
		사립	13	64	113	1,475	23.0	84.9%	
	종로구	공립	4	10	11	211	21.1	15.9%	
		사립	13	53	90	1,116	21.1	84.1%	
	중구	공립	3	14	19	289	20.6	24.5%	1(장충유)
		사립	10	41	89	892	21.8	75.5%	
소계		47	195	334	4,246	21.8		1	

강동송파	송파구	공립	12	46	81	955	20.8	16.0%	2(슬가람, 위례별)
		사립	42	216	421	5,021	23.2	84.0%	
	강동구	공립	8	26	54	558	21.5	12.6%	1(명일유)
		사립	28	165	273	3,883	23.5	87.4%	
	소 계		90	453	829	10,417	23.0		3
강서	강서구	공립	10	39	43	793	20.3	13.6%	1(마곡유)
		사립	43	228	421	5,048	22.1	86.4%	
	양천구	공립	11	42	47	893	21.3	17.2%	1(경인유)
		사립	38	194	362	4,289	22.1	82.8%	
	소 계		102	503	873	11,023	21.9		2
강남	강남구	공립	14	60	68	1,148	19.1	26.8%	2(개포유, 은곡유)
		사립	27	130	273	3,129	24.1	73.2%	
	서초구	공립	9	38	41	795	20.9	26.1%	1(청계숲유)
		사립	19	92	181	2,255	24.5	73.9%	
	소 계		69	320	563	7,327	22.9		3
동작관악	관악구	공립	9	35	49	753	21.5	17.2%	1(신우유)
		사립	27	160	318	3,632	22.7	82.8%	
	동작구	공립	6	25	34	506	20.2	13.7%	1(상도유)
		사립	28	149	311	3,190	21.4	86.3%	
	소 계		70	369	712	8,081	21.9		2
성동광진	광진구	공립	5	18	20	358	19.9	11.3%	
		사립	31	114	220	2,819	24.7	88.7%	
	성동구	공립	11	35	36	676	19.3	26.1%	1(경동유)
		사립	20	78	151	1,916	24.6	73.9%	
	소 계		67	245	427	5,769	23.5		1
성북	강북구	공립	4	13	14	266	20.5	12.9%	
		사립	20	82	148	1,799	21.9	87.1%	
	성북구	공립	13	51	56	1,100	21.6	20.8%	길음유
		사립	39	187	332	4,185	22.4	79.2%	
	소 계		76	333	550	7,350	22.1		1
총 계		공립	202	749	900	15,472	20.7	17.1%	21
		사립	682	3,334	6,259	75,204	22.6	82.9%	-
		계	884	4,083	7,159	90,676	22.2		21

[붙임9]

2017년 신규사업 내역

연 번	세부사업	사업내용	2017년 예산안	재원 구분	주관부서
합 계			17,439		
1	감사관리	청탁금지법연수 및 청렴도 측정관련 용역비	30	자체	감사관
2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전문가양성 특별교육(석사)과정 운영	140	자체	총무과
3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토론하고학습하는 서울교육청교육과정	106	자체	총무과
4	학생생활 지도지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168	자체	정책안전기획 관
5	학생생활 지도지원	유치원 안전체험교육비 지원	442	자체	정책안전기획 관
6	예산관리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시도분담금)	2,942	자체	예산담당관
7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운영	나이스 DBMS 업그레이드 (시도 분담금)	32	자체	정보화담당관
8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운영	원격지백업센터 구축	2,034	자체	정보화담당관
9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중학교협력종합예술활동	3,099	자체	교육혁신과
10	특색교육 과정운영	교육지원팀수업시수경감강사료지원	2,552	자체	교육혁신과
11	특색교육 과정운영	행정혁신시범교육청운영	230	자체	교육혁신과
12	유아교육지원	유아모집시스템 관련 연수 및 홍보	47	자체	유아교육과
13	사립유치원지원	공영형사립유치원시범운영 (운영비, 인건비지원)	1,501	자체	유아교육과
14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협력적작은실천나눔운영	37	자체	초등교육과
15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학교로찾아가는세대간공감교실운영	32	자체	초등교육과
16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 지원	1,223	자체	초등교육과
17	교원연수지원	서울교대정책대학원연수	25	자체	초등교육과

18	교원연수지원	교육전문직원 자비부담연수 지원	60	자체	초등교육과
19	수석교사제운영	초등수석교사역량강화학술심포지엄	13	자체	초등교육과
20	특색교육 과정운영	자유교양과정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개발 및 보급	88	자체	중등교육과
21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서울국제고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비 지원	25	자체	중등교육과
22	교육과정운영	6.10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	65	자체	민주시민교육 과
23	학생생활 지도지원	학교교표상표등록	17	자체	민주시민교육 과
24	도서관운영지원	교육청도서관발전방안정책연구	30	자체	평생교육과
25	평생학습 운영지원	교학상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0	자체	평생교육과
26	직업진로 교육과정운영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발전방안 정책연구	50	자체	진로직업교육 과
27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특성화고 신입생 입학전형료 지원	60	자체	진로직업교육 과
28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	학생창업동아리운영지원	51	자체	진로직업교육 과
29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	가고싶고머물고싶은학교	359	자체	학교지원과
30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학교운동장 개방 관련 보험비	200	자체	교육재정과
31	재무회계관리	공제급여지원(장해, 유족)	1,672	자체	교육재정과